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76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나.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77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78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라.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79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마.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80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바.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81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82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아.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83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684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차.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의안번호 : 685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3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23년 4월 3일

2. 제안이유

가.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금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 예정임.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 예정임.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효율적인 시립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 예정임.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효율적인 시립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라.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효율적인 시립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마.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재단법인 푸른나무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3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육성,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바.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진로탐색 및 체험의 수요증가에 따라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미래진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5년 7월 27일 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년의 재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아.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시립 마포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는 2010년 5월 10일부터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시립시설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자. 시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3년 7월 부터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년의 재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 청소년 교육·상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차.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사단법인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 현 위탁법인이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2025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금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30길 54(시흥2동)
- 개관일자 : 2004.9.1.
- 시설규모 : 부지 6,268㎡ / 건물 5,056㎡(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청소년아지트, 청소년해양 안전체험센터,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78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16백만원, 운영비 424백만원, 사업비 1,357백만원
 - 사업외지출 및 기타 1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나.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목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 개관일자 : 1988.3.17.
- 시설규모 : 부지 5,744m² / 건물 6,203m²(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극장, WAWA청소년아지트,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871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999백만원, 운영비 687백만원, 사업비 2,73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4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217
- 개관일자 : 1999.10.30
- 시설규모 : 부지 7,347㎡, 건물 12,453.21㎡(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딱딱이창의공작소, 헬스장, 골프교실, 강당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807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47백만원, 운영비 297백만원, 사업비 951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212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라.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창동)
- 개관일자 : 2005.10.29.
- 시설규모 : 부지 14,246.98㎡ / 건물 5,016㎡(지상 4층)
- 주요시설 : 청소년 전용공간, 오픈 플레이스, 루프탑, 요리교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34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49백만원, 운영비 230백만원, 사업비 846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20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마.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의 미디어활동을 지원·육성하는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 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 사업
-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
-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 사이트 관리 운영
- 그 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시설규모 : 연면적 1,395.71㎡, 부지면적 529.6㎡ (지하1층, 지상5층)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일반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78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21백만원, 사업비 102백만원, 물건비 145백만원,
경상이전 206백만원, 자본지출 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바.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특화시설로,
 -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1999.12.18.
- 시설규모 : 부지 9,697m² / 건물 5,344.46m²
- 주요시설 : 대강당, 중강당, 청소년카페, 미디어룸, 메이커스페이스룸, 디자인작업장, 어린이작업장, 프로그램실, 무용실, 합주실, 미니극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82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91백만원, 운영비 339백만원, 사업비 1,127백만원, 사업외지출및기타 22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1층
- 시설규모 : 183.49 m^2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47백만원(2023년, 국비 83백만원, 시비 16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7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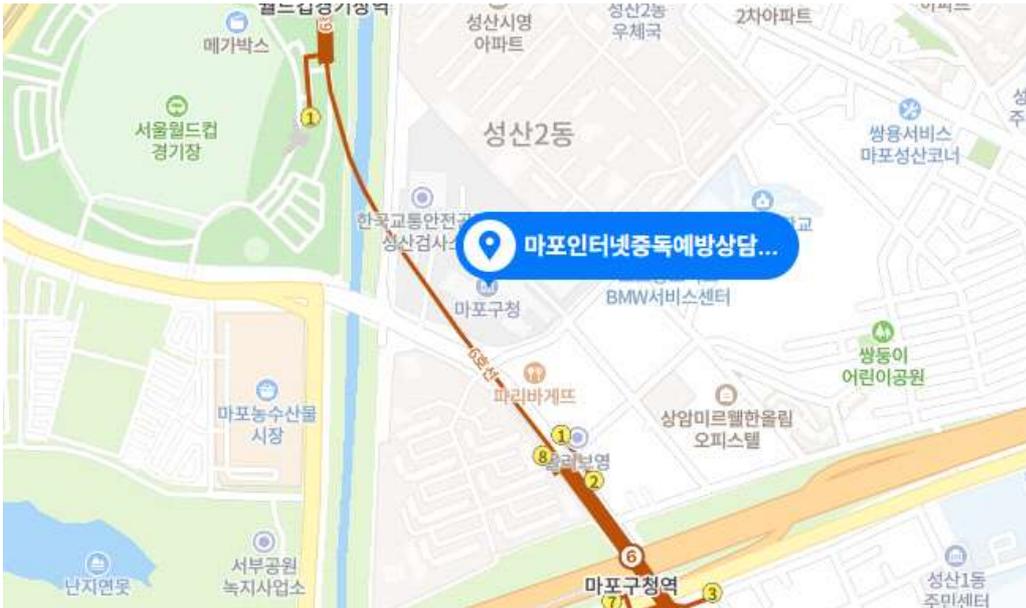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아.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시설규모 : 200.5㎡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63백만원(2023년, 국비 36백만원, 시비 627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520백만원, 운영비 34백만원, 사업비 10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자. 시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사무명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8조

 - 추진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상담, 학업,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간 조직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위탁사무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자유회관 3층)
 - 위치도



- 시설규모 : 총 307.56 m^2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 이용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등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184백만원(2023년)
 - 인건비 739백만원, 운영비 73백만원, 사업비 1,371백만원, 예비비 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차.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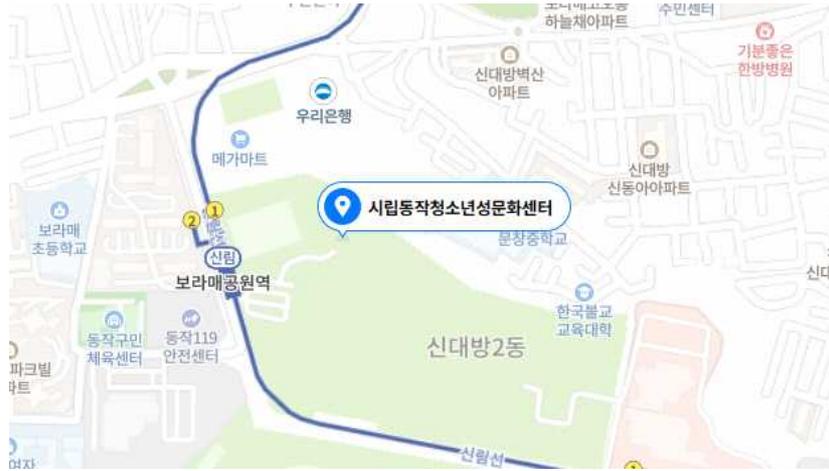
- 위탁사무명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23-1, 자유회관 1층
 - 시설규모 : 340 m^2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2년(2023.7.1.~2025.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적격 심의(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2백만원(2023년, 국비 88백만원, 시비 16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15백만원, 운영비 3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2)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3)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4)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5)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6)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7)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8)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9) 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10)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평생교육국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10건(재위탁 9건, 재계약 1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

※ 재위탁 · 재계약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금번 318회 임시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시설 1개소(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소년시설 운영조례」)에 따른 시설 9개소(청소년활동시설(중랑·창동·목동·금천청소년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래진로센터) 6개소, 기타청소년시설(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동작 성문화센터) 3개소) 등 총 10건이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제318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676	금천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30길 54(시흥2동) · 개관일자 : 2004.9.1. · 시설규모 : 부지6,268㎡ / 건물5,056㎡(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078백만원(2023년)

의안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677	목동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 개관일자 : 1988.3.17. · 시설규모 : 부지5,744㎡/건물6,203㎡(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WAWA청소년아지트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5,871백만원(2023년)
678	중랑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217 · 개관일자 : 1999.10.30 · 시설규모 : 부지7,347㎡, 건물12,453.21㎡(지하2층,지상3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똑딱이창의공작소, 헬스장, 강당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807백만원(2023년)
679	창동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창동) · 개관일자 : 2005.10.29. · 시설규모 : 부지 14,246.98㎡ / 건물 5,016㎡(지상 4층)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오픈플레이스, 루프탑, 요리교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134백만원(2023년)
680	청소년 미디어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시설규모 : 부지529㎡, 건물1,395㎡(지하1층,지상5층)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1,578백만원 (2023년)
681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1999.12.18. · 시설규모 : 부지 9,697㎡ / 건물 5,344.46㎡ · 주요시설 : 강당, 청소년카페, 미디어룸, 합주실, 미니극장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082백만원(2023년)

의안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682	창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1층 · 시설규모 : 183.49㎡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47백만원(2023년, 국비83백만원, 시비164백만원)
683	마포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시설규모 : 200.5㎡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663백만원(2023년, 국비36백만원, 시비627백만원)
68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자유회관 3층) · 시설규모 : 총 307.56㎡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 이용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184백만원(2023년)
685	동작청소년 성문화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23-1, 자유회관 1층 · 시설규모 : 340㎡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탁기간 : 2년(2023.7.1.~2025.6.30.)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적격심의(재계약) · 소요예산 : 252백만원(2023년, 국비88백만원, 시비164백만원)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조례」는 위탁사무의 적정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해당 분야의 민간경쟁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10개소 모두 2023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9개소)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1개소)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상황임.

○ 「민간위탁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나,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에 한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 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한편,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추진 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이유는 민간위탁을 활용한 사업추진 방식의 남용, 장기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의 시설로 종속화, 효율성 및 사업 성과의 하락, 운영상 투명성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목적인 경제적 효율성과 전문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수행 사무의 공공성 확보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의 필요 요건

- 법령 준수 : 민간위탁 절차를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민간단체가 법령을 준수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재정.환경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위탁사무의 공공성**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국민의 이익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공성을 지키며,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
- **전문성** : 해당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노하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립시설을 위탁하는 민간의 단체에게 높은 수준의 청소년 이해도가 요구됨.
- **안정성** :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복지, 행정지원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능력이 요구되며, 위탁사무를 공익에 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될 것이라는 시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위탁기관의 운영 능력이 요구됨.
- **효율성** : 민간위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확보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원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민간과 계약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 능력이 미확보되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성과지표 제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관리능력이 요구됨.
- **공정성** :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절차는 공정성이 요구되며, 민간 민간단체들은 공정경쟁원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조건 등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경쟁성** : 민간단체 간 경쟁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업무의 전문성,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없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 고비용, 저효율, 비능률이 발생할 수 있음.

나. 공통사항 검토

- 평생교육국은 금번 회기(제31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10개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8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보고하고 있음.
- 금번 민간위탁 동의의 대상(청소년시설) 뿐만 아니라 재계약 보고 대상시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지연

- 민간위탁은 같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사무를 민간이 수행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며,
- 그 외 선발절차의 합법성·공정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지속성·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절차가 있고, 사업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민간위탁 중 재위탁의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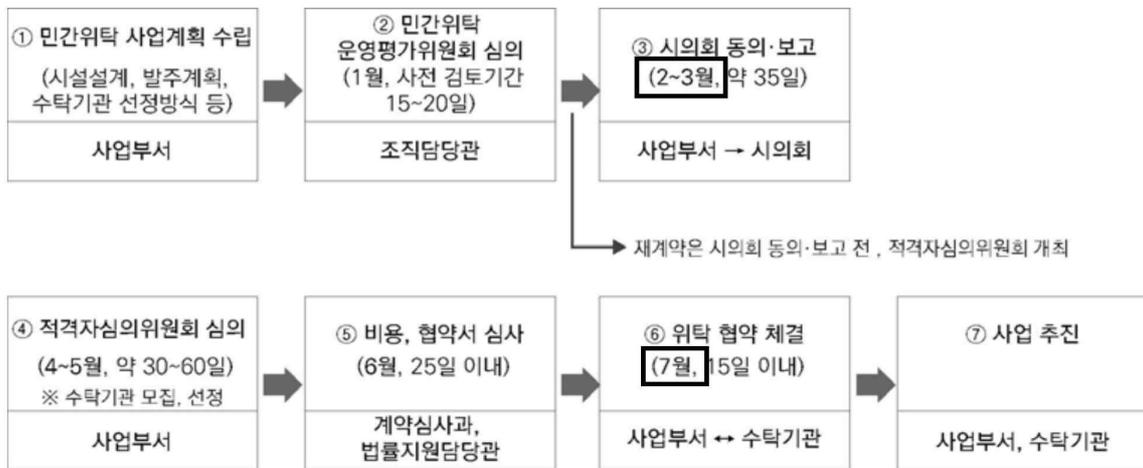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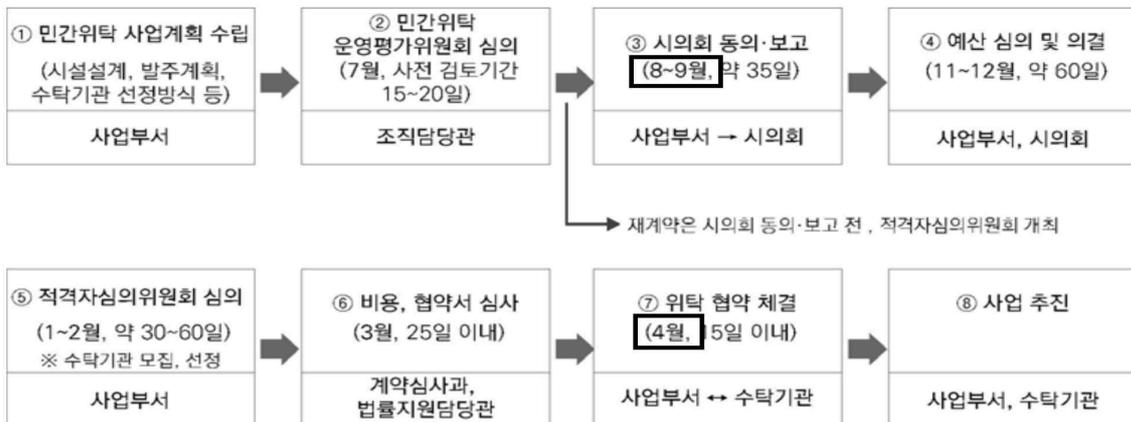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절차이행에 상당한 기간(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는 10개월, 예산이 기 확보된 경우는 총 7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의회 및 심의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추진 일정을 미리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탁협약 체결 예정일에서 최소 4~5개월(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 최대 8개월 전) 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 〉

1. 예산이 기 확보된 경우 - 총 7개월 소요, 협약 4~5개월 전 의회 동의 및 보고



2. 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 - 초 10개월 소요, 협약 7~8개월 전 의회 동의 및 보고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양한 요소(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의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전성 등)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하나,
- 의회는 평생교육국의 늦은 동의안 제출로 인해 청소년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쇄 등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 이러한 상황은 민간위탁의 단점 또는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검토 등 의회의 심의·의결권뿐만 아니라 사후적·소극적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연 제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동의 대상의 위탁기간 현황 〉

	민간위탁시설	최초위탁일	위탁기간	현 수탁기관
1	시립금천청소년센터	2007. 7. 1	2021.7.1~2023.6.30	(재)푸른나무재단
2	시립목동청소년센터	1988. 3.30	2021.7.1~2023.6.30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3	시립중랑청소년센터	1999. 7. 1	2021.7.1~2023.6.30	(사)한국청소년연맹
4	시립창동청소년센터	2005. 7.27	2021.7.1~2023.6.30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5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1999. 7. 1	2021.7.1~2023.6.30	(재)푸른나무재단
6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1999. 7. 1	2021.7.1~2023.6.30	(학)연세대학교
7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2006. 6.20	2021.7.1~2023.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8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0. 7. 1	2021.7.1~2023.6.30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9	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3. 7. 1	2021.7.1~2023.6.3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10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2015.11.18	2021.7.1~2023.6.30	(사)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2) 청소년시설 별 목표제시 미흡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시설별 특성과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목표를 제시하고, 운영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 또는 평가해야 하나,
 - 평생교육국은 각종 청소년계획 등을 통해 각 청소년시설의 고유한 운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통해 각 시설별 연간 운영목표를 수탁기관이 설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 운영목표 설정 수립주체 관련 협약서 〉

제7조(사업계획) ① “광운대”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일부 발췌

- 평생교육국이 각 시설별 목표를 설정·제시하지 않는 이상, 수탁기관은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사업’ 등만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반드시 필요하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사업을 제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수탁기관이 서울특별시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확보했는지, 사업추진 결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생교육국은 시설별 과업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성과보고서의 성과평가 부재

-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는 성과평가가 없으며, 관리·운영의 투명성에 집중된 평가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평생교육국이 시설별 성과목표를 부여하지 않아, 설립목적, 운영목표,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평가는 누락된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의 평가 개요 〉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 평가기간 : 2021년도(실시기간 2022. 3.~ 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출처 : 제318회 임시회 10개 민간위탁 동의안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중 평가개요 발췌

- 사업평가 부분도 있었으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여 우수함”이라는 형식의 평가를 나열하고 있고, 사업목적과 필요성, 사업 추진상 효율성 부족, 효과성 미흡,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등은 누락되어 있어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로는 민간위탁의 성과를 파악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당초 민간위탁 효율성과 효과성 유지 여부,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성과평가의 부재로 인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심의에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을 “단순 시설유지”를 위해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의 투명성만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시설유지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를 해소·해결·지원 등”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성과”에 관련한 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여부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전문조사기관의 평가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2022년 민간위탁 운영평가는 ‘재단법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음.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의 평가 개요 〉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 평가기간 : 2021년도(실시기간 2022. 3. ~ 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출처 : 제318회 임시회 10개 민간위탁 동의안의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중 평가개요 발췌

-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서 수탁하고 있는 시립시설은 마포청소년센터, 문래청소년센터와 금번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가기관인 (재)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탁 법인인 (재)명지학원 명지전문대는 명지학원의 산하기관으로,
 - 평생교육국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법인 간 관계에 대한 검토,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공정한지 여부와 신뢰성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 평가기관 선정의 적정성,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참고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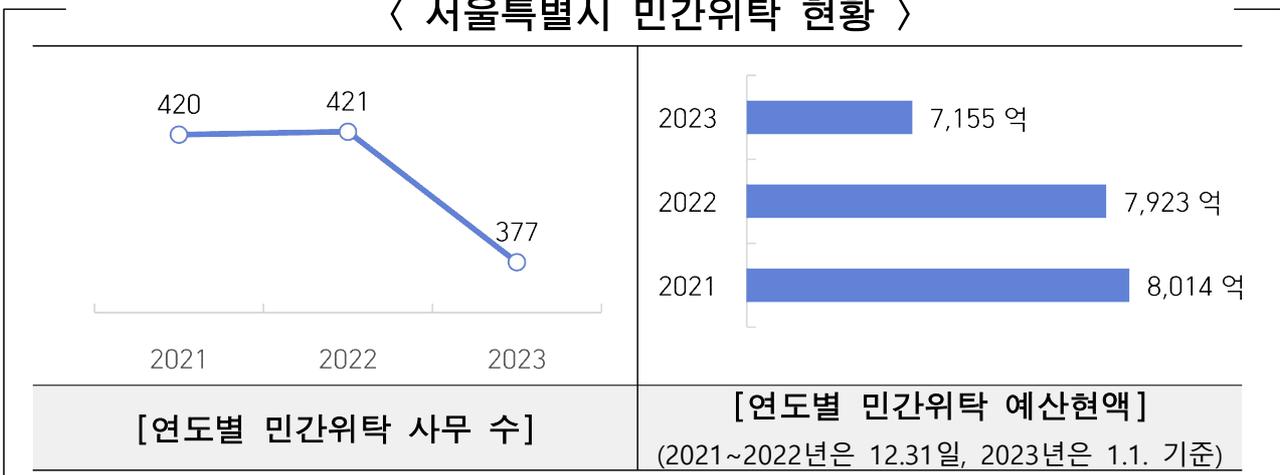
〈 명지학원의 조직도 〉



출처 : 명지학원 홈페이지 (<https://www.mju.ac.kr>)

※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 등은 377개(2023년 1월 기준)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적절한 민간위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현황 〉



출처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보고(2023.2.10.)

-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관리 능력(공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적정한 민간단체 선정능력, 계약협상 능력 등), 지도·점검 능력, 성과 평가능력 등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원활한 관리를 위해 부족한 분야의 역량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역량제고가 어려울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관의 설립,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평가에 집중된 평가방식을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 평가결과의 활용(피드백) 제도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수립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는 2021년도의 실적을 2022년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보고서로 제출하고 있는바, 본 성과보고서가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5)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미공개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동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내역은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공개된 내역은 2020년 7월의 ‘결과’보고(2020.7.9., 청소년정책과-12338) 뿐이며,
 - 이 결과보고도 평가의 개요만 공개할 뿐 평가결과는 미공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절차적 합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의 최근 종합성과평가 공개 내역 〉
2020년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2차)-재기안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13.99 MB) 문서보기 PDF 원문

시설편 평가결과(2차).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338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Redacted]	관리번호	D0000040351997
업무분류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사무) > 성과평가관리		같은 분류 문서보기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6) 평생교육국의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필요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지도·점검, 관리·감독 등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아래의 사례(운영기준 미정비, 민간위탁 조직체계 고정, 법령 및 비현실적 계획수립 등)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운영기준 정비 미흡> 청소년시설의 운영은 「청소년시설 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2001년 제정 이후 2008년과 2016년 단 2회 개정했으며, 마지막 개정 이후 8년간 시행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있어,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운영 기준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으로 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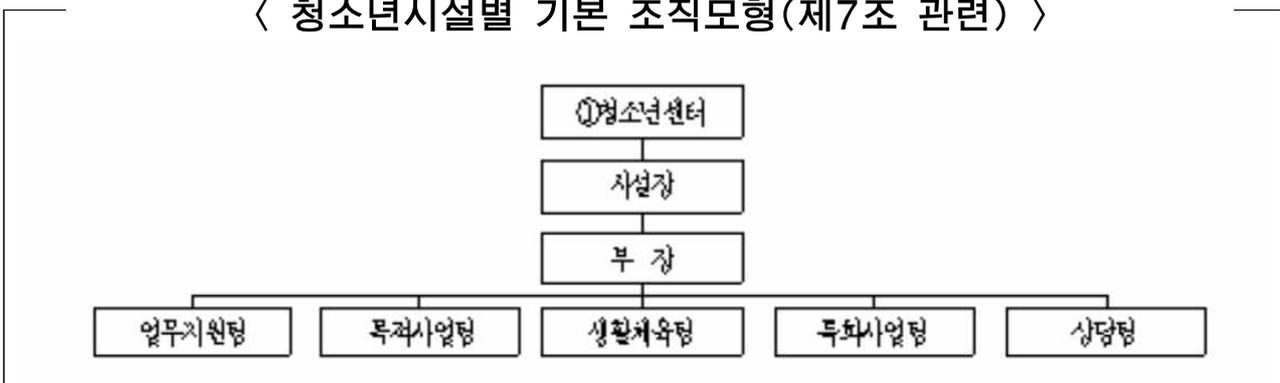
※ 시행규칙의 현실상황 미반영 사례

-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근로청소년복지관 내 임대아파트로 그 명칭을 변경한 후 2013년 운영종료를 결정했고, 2015년 입주자들이 퇴거하고, 2021년 시와 국가간 재산교환을 통해 **국유재산**이 되었으나, 관련 규정(시행규칙 제50조~59조까지)과 별표는 아직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로 유지하고 있음.
- 근로청소년복지관 : 2017년에 시설이 **폐쇄**되었고, 2017년 이후 금천구와 시설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21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계획에 따라 국가(기획재정부)와 재산을 교환하여, 현재 **국유재산**이나, 관련 조문을 유지하고 있음.
- 직업체험센터 : 조례의 별표1은 2020년 직업체험센터에서 **미래진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시행규칙은 이를 미반영하고 있음.

- 청소년특화시설의 경우, 특성과 기능이 각각 상이하여 각 시설의 사업영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하나, 조례는 2020년 양천음악창작센터를 서울시의 청소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기능과 역할 및 사업영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청소년복지관 내 임대아파트 관련 별지서식 6종(입주신청서, 입주희망자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임대차기간 연장신청서, 임대아파트 계약해지(퇴거) 신청서)은 불필요하나 유지하고 있음.
- 별표 1. 청소년시설별 기본 조직모형 중 근로청소년복지관 기본조직모형 존재,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명칭 미변경

② <민간위탁 조직체계 강제>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 [별표1]은 기본조직 모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을 추가로 구성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평생교육국이 제시한 조직체계를 청소년시설에게 강요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별 기본 조직모형(제7조 관련) >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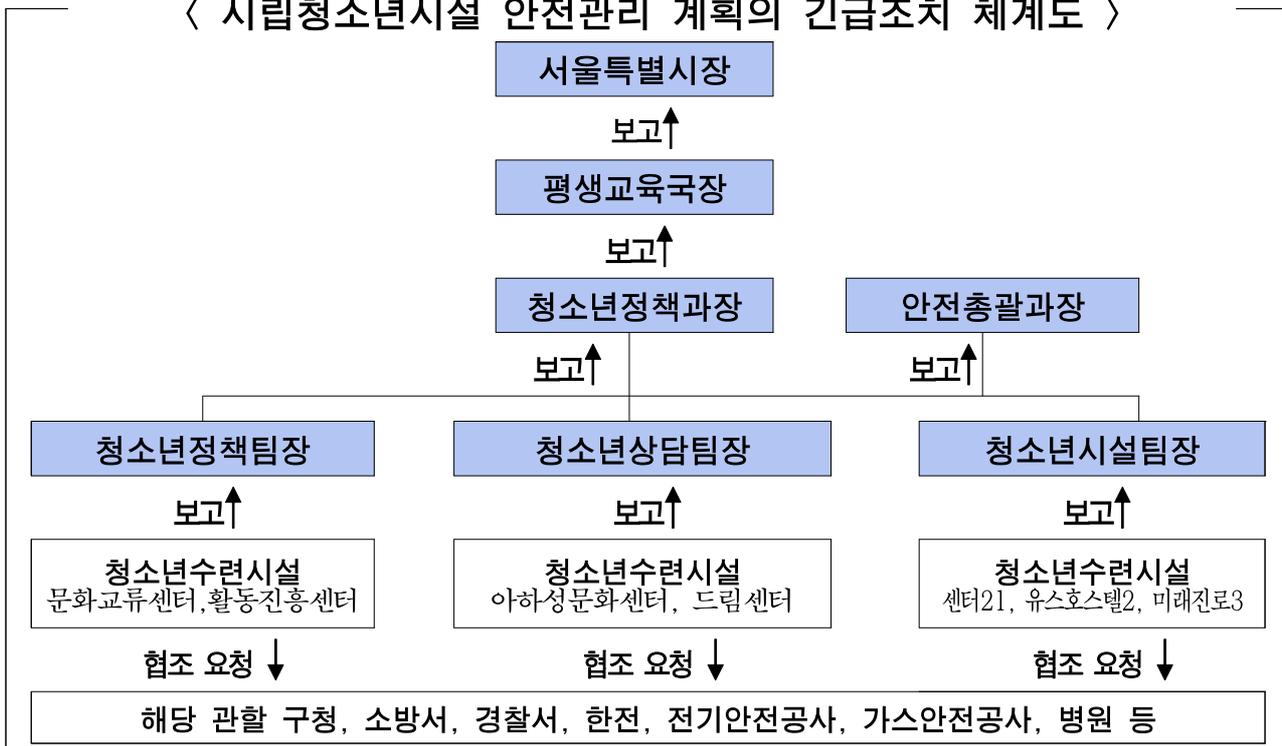
- 평생교육국은 위탁목적은 수탁기관에 명확히 부여하고, 수탁기관은 목표 달성 수단을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특징을 잘 활용한 사업추진이나, 평생교육국은 위탁목표를 부여하지 않고, 목표실현 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를 집행기관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수탁기관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정부의 청소년정책의 방향성 인지, 집행기관의 관리능력, 성과제시 능력, 상황변화를 고려한 판단력, 성과 평가 능력 등)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③ <안전관리 계획의 부실> 평생교육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에 따라 ‘시립청소년시설 안전관리 계획(2022.1.18. 청소년정책과-1475)’을 수립은 했으나, 법령 및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센터장 등)에게 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시설의 계획과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긴급조치 체계도 >



출처 : 2022년도 시립청소년시설 안전관리 계획 중 “긴급조치 체계도” 발췌

- 평생교육국의 긴급조치 체계도는 현장 조치에 대한 지원 또는 후속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보고와 협조요청을 중심으로 긴급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긴급조치체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평생교육국은 유해·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은 7월과 8월에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장마는 통상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바, 타 안전예방점검과 같이 5월과 6월초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평생교육국은 정기안전점검에 대해 센터장 등 직원이 점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기안전점검은 각각의 법률(「건축물 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등)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법령에서 규정한 정기안전점검과 구분하기 위해 점검명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 대상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점검명	시기	점검자	점검방법
소방안전점검	상/하반기 2회	소방전문업체	위탁
전기,가스,승강기안전점검	월 1회	전기, 가스, 승강기 전문업체	위탁
보일러 안전점검	상/하반기 2회	보일러 전문업체	위탁
태양광 시설점검	상/하반기 2회	시설관리자	자체
정기안전점검	월 1회	관장, 부장, 팀장, 직원 등	자체
해빙기 안전점검	2월~3월	관장, 부장, 팀장, 직원 등	자체
우기 대비 안전점검	7월~8월	관장, 부장, 팀장, 직원 등	자체
동절기 안전점검	12월	관장, 부장, 팀장, 직원 등	자체

출처 : 2022년도 시립청소년시설 안전관리 계획

7) 장기수탁 문제

- 청소년수련시설은 법령에 따라 청소년단체만 수탁할 수 있고, 금번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목동청소년센터의 경우 35년간 특정 청소년단체가 수탁하고 있으며, 9개소가 10년 이상 같은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문화관광부 고시(제2005-6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별 위탁단체 및 전체위탁기관 〉

연번	시설명	수탁단체명	전체 위탁기간	구분
676	금천청소년센터	(재)푸른나무재단	10년 (2013.07.01.~2023.06.30.)	재위탁
677	목동청소년센터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35년 (1988.03.30.~2023.06.30.)	재위탁
678	중랑청소년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34년 (1999.07.01.~2023.06.30.)	재위탁
679	창동청소년센터	광운대학교	18년 (2005.07.27.~2023.06.30.)	재위탁
680	청소년미디어센터	푸른나무재단	24년 (1999.07.01.~2023.06.30.)	재위탁
681	청소년미래진로센터	(학)연세대학교	24년 (1999.07.01.~2023.06.30.)	재위탁
682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18년 (2005.07.27.~2023.06.30.)	재위탁
683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13년 (2010.05.10.~2023.06.30.)	재위탁
68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10년 (2013.07.01.~2023.06.30.)	재위탁
685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8년 (2015.11.18.~2023.06.30.)	재계약

○ 시립청소년시설을 특정 청소년단체에게 장기위탁하는 것은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의 부속시설화되거나,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위탁사무 수행 능력의 저하, 독과점, 지역사회와 갈등 또는 청소년 사업의 축소,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시립시설, 민간단체의 부속시설화)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 운영하여, 민간단체가 시립시설을 해당단체의 부속시설로 공포하거나 광고하며, 시립시설의 인력충원 시 적절한 채용절차 거치지 않고, 무자격의 재단인력을 시립시설로 인사 이동하는 등 시립시설의 운영의 비능률성을 축적될 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

- (공정성 문제) 민간위탁이 장기간 특정 청소년단체에 집중된 것은 청소년단체는 경쟁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특정 단체가 시립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탁월함을 보였다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시립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특정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서 인사·회계·재무·물품관리 등에서 매년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는 누락되어 의회에 보고되고 있는바, 장기수탁이 탁월한 운영능력보다는 민간단체간 경쟁이 제한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위탁사무의 수행능력 저하) 장기간 민간위탁을 받은 청소년단체는 단체 내부의 인력구성, 경영능력, 자금난 또는 타성에 빠진 업무수행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운영에 대한 적극성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정 청소년단체가 장기수탁할 수 있는 이유는 위탁기간 동안 작은 성과를 큰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경험 또는 전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재계약 및 재위탁시 세심한 집행기관의 주의가 요구되나, 평생교육국 내부에서도 순환보직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식·경험 등의 부족으로 이러한 성과부풀리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독과점)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청소년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경우, 청소년단체들 사이에서 해당 단체의 지위나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대 청소년단체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단체 간 건강한 경쟁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은 제약될 수 있는바, 거대 청소년단체들이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총 수탁기간의 제한 또는 총 수탁시설 수의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각각 또는 중복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사회와 갈등 또는 청소년사업의 축소와 변형) 시립시설을 장기 수탁한 특정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사업을 우선할 경우 지역주민의 요청(성인 취미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지역사회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소년사업보다는 지역기여프로그램(수익사업)을 우선하면 청소년사업의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청소년 이용의 축소를 가리기 위하여 수학, 원어민 영어수업 등의 사설학원에서 운영할 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꾸며, 청소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사업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은 부족한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연계'라는 방식으로 청소년 이용률의 최저치(60%)를 방어하고 있으나, 청소년사업의 축소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청소년사업의 변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시립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청소년단체의 장기수탁 문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청소년보호, 복지 시설 등에서도 장기수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 장기수탁을 허용하는 평생교육국의 행정은 신생 청소년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고, 중견 청소년단체가 민간위탁 시장의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인 '민간 단체간 경쟁'을 제약하여 기존 거대 청소년단체들이 이권을 독점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적은 비용으로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나, 10년이 넘는 장기수탁이 속출함에 따라 상당수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기대했던 민간위탁의 효과를 실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어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수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8) 인센티브 제도 법령 준수 필요

- 법령(「공유재산법」)과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인센티브)으로 하는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성과로 하여 계약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 인센티브 지급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미리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체결이 가능함(인센티브 지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7페이지)
-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성과로 측정 가능한 경우 계약을 통해 민간이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36페이지)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평생교육국은 법령과 지침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① 수입증대, ② 계약에 따른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에 따르지 않고, 위탁사무 또는 시설운영 목표가 아닌 예산집행율을 인센티브의 평가지표로 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법령과 지침에 부합한 인센티브 제도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의 인센티브 개선 사항 〉

② 인센티브 지급의 효과성 확보 위해 배점 기준 조정 : 평가 변별력 강화

○ 청소년시설 현황 자료 검토하여 전체 지표 배점 재구성

- 사업계획서, 결산자료, 평가·점검자료, 홍보 채널 운영 현황 등 검토
- 각 지표 배점 단계마다 시설별 평정결과 적정하게 분포하도록 구성

검토 내역		지표 구성														
(사례 1)	※ 청소년시설 회계정산 결과 민간위탁금 집행률	C. 예산집행률 매우우수 (3.0) : 98% 이상 우 수 (2.5) : 96% 이상 ~ 98% 미만 보 통 (2.0) : 94% 이상 ~ 96% 미만 미 흡 (1.5) : 92% 이상 ~ 94% 미만 매우미흡 (1.0) : 92%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집행률</th> <th>개소 수</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21</td> </tr> <tr> <td>100%~98%</td> <td>**</td> </tr> <tr> <td>98%~96%</td> <td>**</td> </tr> <tr> <td>96%~94%</td> <td>**</td> </tr> <tr> <td>94%~92%</td> <td>**</td> </tr> <tr> <td>92%미만</td> <td>4</td> </tr> </tbody> </table>		집행률	개소 수	100%	21	100%~98%	**	98%~96%	**	96%~94%	**	94%~92%	**	92%미만	4
	집행률		개소 수													
	100%		21													
	100%~98%		**													
	98%~96%		**													
	96%~94%		**													
94%~92%	**															
92%미만	4															

출처 : 2022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추진계획 발췌

-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계약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율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따라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활용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 평생교육국은 재원을 증대된 이용료의 수입이 아닌 민간위탁금의 일부를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9) 예산전용 연말 집중 문제

○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제19조, 제22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산전용은 시장의 승인(항간 전용)을 얻거나, 7일 이내 보고(항·목간 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청소년시설의 예산전용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 또는 추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은 연중 발생한 예산전용을 연말이 되어서야 전용을 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예산의 전용) ① 운영자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항간의 전용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운영자가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는 예산전용의 연말집중은 평생교육국의 인센티브 평가 항목 중 예산집행률이 있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예산전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동의 대상 기관의 예산변경 일자 >

시설명	예산변경 일자			사유
	2022	2021	2020	
금천청소년센터	2022.05.26. 2022.12.13.	2021.12.24.	2020.11.06. 2020.12.30.	추경 및 사업 변경
목동청소년센터	2022.05.26 2022.12.13	2021.12.27	2020.11.06. 2020.12.30	추경 및 사업 변경

시설명	예산변경 일자			사유
	2022	2021	2020	
중랑청소년센터	2022.05.26. 2022.12.13.	2021.12.24	2020.11.06. 2020.12.30.	추경 및 사업 변경
창동청소년센터	2022.05.26. 2022.12.13.	2021.12.24.	2020.11.09. 2020.12.30.	추경 및 사업 변경
청소년미디어센터	2022.11.24	2021.12.01. 2021.12.21.	2020.07.30. 2020.10.15. 2020.12.23.	추경 및 사업 변경
미래진로센터	2022.09.16. 2022.12.13.	2021.10.18. 2021.12.20.	2020.11.05. 2020.12.30.	추경 및 사업 변경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2022.03.7. 2022.12.12.	2021.03.18. 2021.11.26.	2020.11.02. 2020.12.14.	추경 및 사업 변경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2.10.05. 2022.12.12.	2021.12.01. 2021.12.15.	2020.10.06. 2020.12.07.	추경 및 사업 변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021.8.19. 2022.9.19.	2020.9.24.	추경 및 사업 변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2022.12.20.	2021.12.07.	2020.11.02. 2020.12.14.	추경 및 사업 변경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연말에 편중된 예산전용은 평생교육국의 편의주의적 행정 또는 청소년시설의 위법한 관행의 고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며, 법령과 규칙에 따라 승인 또는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예산전용 등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전례답습적 관행의 근절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10) 사업 및 예산 승인시기 부적정

-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예산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의 예산승인을 2월말 또는 3월에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고 있어, 민간위탁 시설은 매년 1월과 2월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평생교육국은 규칙을 어기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승인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예산의 승인)
 운영자는 시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영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조건이 부여된 예산을 12월 말까지 승인한다.

제3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운영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시설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과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행의 개선 및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법한 행정을 합리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부적정한 관행 및 편의주의적 행정을 근절하려는 평생교육국의 결단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동의 대상기관의 연도별 최초 사업·예산 승인일 내역 〉

시설명	사업 및 예산의 승인일		
	2022	2021	2020
금천청소년센터	2022.02.25.	2021.03.22.	2020.02.28
목동청소년센터	2022.02.25.	2021.03.22.	2020.02.28.
중랑청소년센터	2022.02.25.	2021.03.22.	2020.02.28.
창동청소년센터	2022.02.25.	2021.03.22.	2020.02.28.
청소년미디어센터	2022.02.28.	2021.02.25.	2020.05.14.
청소년미래진로센터	2022.02.11.	2021.02.26.	2020.02.07.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2022.03.07.	2021.03.18.	2020.03.04.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2.02.28.	2021.03.15.	2020.03.0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2.02.28.	2021.02.16.	2020.04.10.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2022.03.07.	2021.03.18.	2020.03.04.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우수탁협약서 상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과 승인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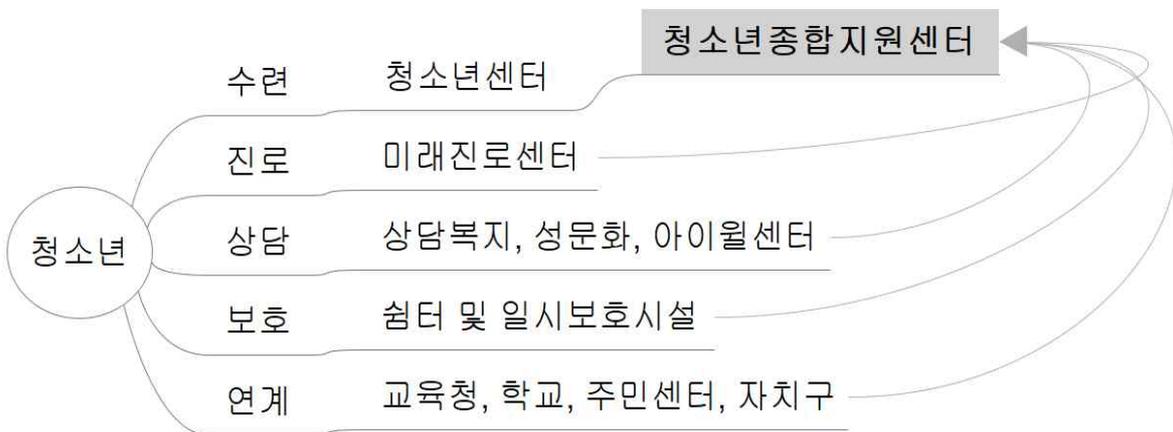
제7조(사업계획) ① “청예단”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금천청소년센터 우수탁협약서 중 제7조 발췌

11) 청소년센터의 종합지원센터화 한계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의 전용성 확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한 건물에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입주하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2023년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은 공간중심이 아닌 정보플랫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ONE-STOP 서비스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2019년 이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련 계획이나, 평가, 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바, ‘청소년종합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측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개념도 〉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정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청소년 인구의 감소, 가족형태의 단순화 및 다양화(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스마트기기 보급, 인터넷망 확대 등 환경변화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등)와 미래전망에 따라 **창의·융복합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지원적(支援的)·협업적 청소년 정책”을 수립(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2018~2022년도)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으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의 복합화 또는 연계**를 추진했음.
- 이듬해인 2019년 서울시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계획(2019.2.20., 청소년정책과-3339)**’을 발표하고, 보라매청소년센터(강남지역)와 광진청소년센터(강북지역)를 시범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을 하였음. 이후 청소년센터 등에서는 공간적 통합을 추진했고, 공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센터는 기능적 통합 또는 센터 고유기능의 확대(청소년활동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육성)등을 통해 ‘**청소년 ONE-STOP 서비스**’ 체계를 지향하였음.
- 한편, 2023년 정부는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 정책(청소년센터의 복합화 등)이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부족, 낮은 정책 체감도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간의 통합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팎의 연계 강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디지털 유해환경의 차단 및 보호, 청소년권리 강화,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각 기관별 역량(전문가 확보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후 밀접한 연계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계획하고 있음.**

※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한계 및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증가, 청소년시설 수요·이용감소, 사각지대(부처·기관 간 연계부족, 학업 중단시 정보부족 등)와 정보 및 서비스 격차를 확인하고,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과 복합형(은둔형+인터넷 중독·과의존 등) 위기청소년들이 다수 발견, 근로시장의 변화, 디지털 유해요인, 청소년 참여의 양적·질적감소, 정책인프라 개선과 현장여건 반영에 불구하고, 정책 전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시립청소년센터의 공공시설 입주현황

- 목적·기능의 전용성 유지 청소년센터 (공공시설 미입주 센터) : 노원, 목동, 서대문, 성북, 문래, 망우, 구로, 동대문 청소년센터 등 총 8개소
- 공공시설 1개 입주 청소년센터 : 성동, 수서, 서울, 강북, 강동, 금천, 은평 청소년센터 등 7개 센터는 구립상담복지센터가, 마포청소년센터는 아이월센터가 입주, 화곡청소년센터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입주, 총 9개 청소년센터
- 공공시설 2개 이상 입주 청소년센터 : 광진(성문화+아이월), 보라매(아이월, 상담복지, 활동진흥), 중랑(상담복지, 성문화센터), 창동(상담복지, 아이월, 성문화) 등 총 4개 청소년센터에는 2개 이상의 시설이 입주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추진했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성과와 한계, 개선방향, 전망 등을 평가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추구했던 청소년시설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종합지원’이라는 정책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거나 환류, 개선대책은 없었는바, 평생교육국은 계획만 수립하고, 관리 등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수련시설은 전용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종합지원센터화가 진행 중인 다수의 청소년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평생교육국의 향후계획을 참고하여 시설종합화에 대한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공통기준 중 일반기준)

3) 설치기준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营业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12) 청소년시설 정·현원 불일치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시설의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을 결정하고, 수용인원에 따라 직원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 평생교육국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시설 전용면적과 수용인원의 부정합) 개선과 청소년센터의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화’ 추진에 따라 전용면적의 감소를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권장’하는 기준으로 청소년시설의 수용정원을 정비(시립청소년센터 수용정원 정비 계획, 2019.12. 13., 청소년정책과-22200)하고, 청소년시설 직원의 정원을 재편성하였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 수 권고 〉

2) 종사자의 배치관리

-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 행정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 수용정원 대비 전체 직원 수를 최소 4% 이상 확보(권장)
 - * 수용정원 대비 정규직 직원 수를 최소 3% 이상 확보(권장)

출처 :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48p 발췌

〈 서울특별시가 정한 청소년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 〉

- 수용정원 정비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
 - 향후 ‘정규직 배치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권고안)’으로 활용

출처 : 시립청소년센터 수용정원 정비 계획(2019.12.13., 청소년정책과-22200)

- 청소년센터의 전체종사자 현원(691명)은 여성가족부 기준(666명) 대비 25명을 초과하고 있고, 정규직(현원 415명)은 여성가족부 기준(501명) 대비 86명이 부족하며, 비정규직(현원 276명)은 여성가족부 기준(165명) 대비 111명을 초과하고 있음.

〈 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수 과소 현황 〉

(단위:천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여성가족부 기준	666	501	165	평생교육국이 정한 청소년센터의 전체 정원은 585명임.
청소년센터 현원	691	415	276	
기준 대비 현원 차이	25명 초과	86명 부족	111명 초과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5)은 “청소년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기준 〉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가.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중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받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거리(의존명사) : 내용이 될 만한 재료, 해낼 만한 일, 처리할 만한 것. 청소년 시설은 사업을 분야/사업/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거리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예시) 국거리, 반찬거리, 한 입 거리, 일거리, 글거리, 놀거리 등

- 목적사업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정규직원이 수행하고, 그 외 수익사업(유아체능단, 꽃꽂이, 악기, 바둑, 생활체육 등)은 비정규직, 전문강사 또는 강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정규직의 과소 및 비정규직의 과다는 청소년사업의 과소 및 수익사업의 과다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시설의 기능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데,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의 직원의 권장기준과 정·현원 내역 〉

(2022년 9월 기준, 단위:명)

	수용인원	권장 직원수		정원	현원		
		전체	정직원		전체	정직원	비정규직
합계	16,429	666	501	585	691	415	276
서울	800	32	24	27	32	16	16
성동	760	31	23	27	45	21	24
광진	804	33	25	27	29	20	9
동대문	721	29	22	28	25	15	10
중랑	732	30	22	32	33	21	12
망우	850	34	26	28	46	24	22
성북	802	33	25	28	36	16	20
강북	940	38	29	28	46	25	21
창동	713	29	22	27	25	15	10
노원	1,000	40	30	28	38	28	10
은평	727	30	22	28	34	17	17
서대문	752	31	23	28	26	20	6
마포	750	30	23	28	31	25	6
목동	810	33	25	28	39	22	17
화곡	701	29	22	25	24	10	14
구로	700	28	21	28	27	14	13
금천	723	29	22	28	29	27	2
문래	800	32	24	28	40	20	20
보라매	720	29	22	30	31	20	11
수서	865	35	26	28	31	22	9
강동	759	31	23	26	24	17	7

13) 과도한 '제3자 위탁'과 용역

- 「청소년활동 진흥법」, 「민간위탁 조례」와 그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이 위탁 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위탁사무의 핵심적이지 않는 사무(시설 보수 및 청소 등)는 용역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위탁은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는 다시 위탁(제3자 위탁)과 용역을 구분하기 위해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재위탁(제3자 위탁)과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무위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직접적이며 핵심적인 사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사무의 전체과정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시위탁(제3자 위탁)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 양적기준 : ① 용역개별금액이 사업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개별용역계약의 합계가 전체 위탁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용역계약금액이 전체 위탁비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위탁업무가 용역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적기준(보조지표) : 해당 용역이 1회성으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단순지원사무 및 부수적인 사무가 명확한 경우

-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사업(시설대관, 교육사업(영어, 수학, 논술, 요리, 바둑, 코딩, 피아노, 드럼 등), 목적사업(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동아리, 교육(요리, 진로, 환경, 외국어 등) 진로 등), 생활체육사업(수영, 아쿠아로빅, 요가, 방송댄스, 필라테스 발레, 줌바, 무용, 헬스, 축구, 풋살, 농구 등), 보조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센터장, 부장, 사무직, 무기계약직(시설관리) 등 제외)은 12~15명 내외라는 점, 다양한 전문가(수학, 무용, 음악 등)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대부분의 사업을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등)이 아닌 전문 강사(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 등 포함)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는 위탁사무의 핵심적인 업무인 상담사업을 30~40명의 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재위탁(제3자 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의 사업 추진방식이 다시위탁(제3자 위탁)인지 용역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지도·점검 및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으로 보이며,
 - 평생교육국이 다시위탁(제3자 위탁)과 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목인 또는 용인을 지속하는 경우,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시설을 직영(평생교육국이 자격있는 자와 프로그램별, 사업별 위수탁계약 추진 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14) 과도한 공모사업 수행

- 공모사업은 청소년시설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원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청소년시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번 민간위탁 동의대상 기관의 공모사업 수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동의 대상기관의 연도별 공모사업 현황 〉

시설명	평균	합계	2022	2021	2020
소계	74.3	223	74	75	74
금천청소년센터	9.7	29	7	12	10
목동청소년센터	11.0	33	9	13	11
중랑청소년센터	20.3	61	22	19	20
창동청소년센터	7.0	21	12	3	6
청소년미디어센터	13.3	40	13	15	12
청소년미래진로센터	5.7	17	6	5	6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1.0	3	1	1	1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5.3	16	4	6	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	0	0	0	0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1.5	3	0	1	2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탁기관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직원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를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모사업이 많을수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더 필요하게 되나, 다수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시설의 현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수탁기관이 부족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는지,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과도한 공모사업은 수탁법인의 성과로 연결되어 수탁법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나,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며, 서울특별시에게는 위탁사업에 활용해야 할 공간, 시간, 인력 등이 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등 위탁사업 소홀 또는 피해로 이어지는바,
 - 평생교육국은 '위탁사업 우선'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공실의 규모와 시간, 공모사업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공모사업 선정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 청소년시설의 연간사업계획 미흡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 운영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시설의 특성(지리적 특성, 사회·경제·교육 등의 환경, 인구변동, 다문화 추이, 청소년 참여도, 사회안전망 등), 환경 및 대상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도 누락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7조 (사업 계획의 수립) ① 운영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시설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시설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정부·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의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달성하기 쉬운 것만”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은 대동소이(온라인 썬방 프로그램 등)한 것으로 보이며,
 - 내용은 동일하나 프로그램명과 사업설명과 바꾸어 새로운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새로운 청소년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민간단체의 수탁이 반복될수록 청소년시설 설치의 효과는 저감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의 연간 사업계획은 해당 지역의 환경변화, 청소년들의 요구 파악, 청소년의 호응도 등으로 고려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청소년시설과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6)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 평가 영역을 운영기반, 사업활동, 만족도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20여개 평가지표를 두고 청소년시설을 평가하고 있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기준	최종 점수
1. 운영기반 (36점)	1.1 조직 및 인력운영	13	1.1.1.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3	
			1.1.2.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	
			1.1.3. 직원교육 지원의 적극성	3	
	1.2 재정 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17	1.2.1. 회계관리 적정성	10	
			1.2.2. 사업예산 집행 효율	7	
	1.3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6	1.3.1.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가치제고	2	
1.3.2. 문서 및 개인정보 관리			4		
2. 사업활동 (49점)	2.1. 운영전략 관리	8	2.1.1.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5	
			2.1.2. 자체평가 및 환류	3	
	2.2 사업 활성화	23	2.2.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5	
			2.2.2. 지역 연계협력의 체계성	5	
			2.2.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3	
			2.2.4. 단위 프로그램 관리의 체계성	5	
			2.2.5.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2.3. 사업 성과	18	2.3.1. 청소년지원 사업비 수준	3	
			2.3.2. 청소년 시설이용률	5	
			2.3.3. 청소년 프로그램 집행률	5	
2.3.4.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 창출 수준			5		
3. 만족도관리 (15점)	3.1 만족도 관리	15	3.1.1. 만족도 조사	12	
			3.1.2. 만족도 제고 노력	3	
소 계				100	
4. 가-감점			A. 가점	2	
			B. 감점		
합 계					

- 민간위탁의 목적은 고비용·저효율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은 효과성(목표달성 여부)와 효율성(목적달성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 등이며, 부수적 평가내용은 관리운영의 절차적 합법성(공공성 담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류(피드백, 서비스의 개선, 보완 등) 시스템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의 성과평가는 ‘시설 또는 조직 운영’ 또는 ‘관리의 투명성’ 등은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로는 청소년시설의 사업효과를 추론하거나 상상할 수 밖에 없는데,
-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효과성(의미있는 성과인지 여부), 효율성(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의 적정성), 타당성(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형평성(이용대상의 분류별, 분야별, 프로그램의 배치), 호응성(청소년들의 필요·선호·가치의 충족), 적합성(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정책적 성과인지 여부) 등의 기준에서 청소년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7)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증 필요

- 여성가족부는 2022년 말(코로나19 유행시기)부터 ‘청소년 이용률’은 실태만 파악하고 평가에는 미반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이용률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이용률을 최소 60%이상 유지(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침)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이용률 산정 기준 〉

- 이용률 산정기준
 -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관리
 - * 전체 이용자 수를 모수로 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 수를 계산
 - * 청소년이용률 6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용률 분포와 경향을 분석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침(2022, 여성가족부) 59페이지 발췌

- 시립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이용률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청소년 이용률’을 성과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은 사전에 확보해야 하나, ‘시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입증’은 생략되고 있음.

〈 2023년 여성가족부의 평가지표 개선사항 - 청소년이용률 미반영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비고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지 못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고 청소년 이용률 등 일부 지표는 실태만 조사하고 평가 미반영 *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1년 말 지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운영을 하지 못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축소 또는 완화하고 '21년 평가지표를 일부 개선 *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년 말 지표 확정 	변경

출처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3년2월)

-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는 '양질의 프로그램 (공공성, 신뢰성, 실효성, 전문성 등 확보 프로그램 인증)'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동의 대상시설이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정부 인증 비율은 평균 3.3% 수준임.

〈 동의 대상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내역 〉

2023.4.14.기준

시설명	프로그램 수			비고
	전체	인증	비율	
소개	641	22	3.3%	
금천청소년센터	91	4	4.4%	· 청소년센터는 총 95개 인증프로그램 운영 (구로 2, 노원 4, 금천 4, 강동 7, 중랑 9, 서대문 12, 은평 2, 화곡 4, 광진 2, 서울 8, 마포 8, 성북 2, 문래 3, 망우 7, 성동 3, 목동 6, 보라매 6, 창동 3, 수서 3) · 각 청소년센터 평균 5개의 인증프로그램 운영 · 강북·동대문청소년센터는 미운영
목동청소년센터	186	6	3.2%	
중랑청소년센터	114	9	7.9%	
창동청소년센터	104	3	2.9%	
청소년미디어센터	55	0	0.0%	타 시립특화시설 인증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미래진로센터	34	0	0.0%	타 시립미래진로센터는 인증프로그램 운영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14	0	0.0%	타 시립성문화센터는 인증프로그램 운영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3	0	0.0%	타 아이월센터는 인증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	0	0.0%	비교대상 없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19	0	0.0%	타 시립성문화센터는 인증프로그램 운영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2023년 프로그램 현황)

누리집(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중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 중 활동인증프로그램 및 활동인증기관

- 청소년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창의성 또는 자율성 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습학원화, 문화센터화, 스포츠클럽화 등 청소년시설의 기능 변형 및 무분별한 수익사업 확대를 방지하고, 청소년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짐.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신청 매뉴얼’ 발체)

- 정의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목적
 - ①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②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③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 및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④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인증대상 : 참가하는 청소년 인원이 일정 규모(**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18) 한 법인의 다수수탁 문제

-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은 총 63개소(개관준비 중인 양천음악창작센터 제외)이며, 이중 평생교육시설(2개소)를 제외하면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은 총 61개소로, 30개의 청소년단체가 수탁하고 있고, 6개의 청소년단체가 3개 이상의 청소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단체별 시립시설 위탁현황 〉

(단위:개소)

수탁기관명	위탁시설수	수탁기관명	위탁시설수
(사)국제아동인권센터	1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
(사)삼동청소년회	1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4
(사)인터넷꿈희망터	3	(재)푸른나무재단	3
(사)탁틴내일	2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1
(사)한국스카우트연맹	2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4
(사)한국청소년세상	1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6
(사)한국청소년연맹	7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3
(사)한국청소년육성회	2	(학)삼육학원삼육대학교	1
(사)한국청소년재단	1	(학)서경대학교	1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1	(학)연세대학교	1
(사)행복창조	1	(학)충신대학교	1
(사)홍사단	4	(학)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강서대학교	1
(사)복엔젤스헤이븐	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2
(재)대산문화재단	1	성동구	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1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1

- 6개의 청소년단체가 수탁한 시설은 총 34개소로, 전체 청소년시설의 55.7% 규모이며, 인력의 규모는 57.8% 수준이고, 전체 민간위탁금의 5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3개 이상 청소년시설 수탁기관 현황〉

(단위:개소,명,천원)

	위탁시설수		고용인력수		민간위탁금	
	개소	비율	명	비율	금액	비율
청소년시설 전체	61	100.0%	1,236	100.0%	51,119,006	100.0%
6개 청소년시설 합계	34	55.7%	714	57.8%	27,079,844	53.0%
(사)인터넷꿈희망터	3	4.9%	24	1.9%	1,424,487	2.8%
(사)한국청소년연맹	7	11.5%	157	12.7%	5,998,768	11.7%
(사)홍사단	4	6.6%	69	5.6%	2,738,096	5.4%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4	6.6%	72	5.8%	2,291,019	4.5%
(재)푸른나무재단	3	4.9%	110	8.9%	3,122,821	6.1%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4	6.6%	57	4.6%	4,731,261	9.3%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6	9.8%	143	11.6%	4,772,496	9.3%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3	4.9%	82	6.6%	2,000,896	3.9%

<3개이상 청소년시설 수탁기관별 청소년시설 내역>

(2023년1월기준)

수탁법인/시설명	직원수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사) 한국청소년연맹			
동대문청소년센터	25	2021.7.1.~2024.6.30	760,000
중랑청소년센터	33	2021.7.1.~2023.6.30	1,289,800
구로청소년센터	28	2023.1.1~2025.12.31	712,500
강동청소년센터	26	2022.7.1~2025.6.30	1,117,3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4	2022.1.1~2023.12.31	1,021,612
하이서울유스호스텔	17	2020.7.1~2023.6.30	수익시설
금천단기쉼터	14	2023.1.1~2024.12.31	1,097,556
(학)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성북청소년센터	36	2020.7.1~2023.6.30	819,900
강북청소년센터	45	2021.7.1~2024.6.30	760,000
창동청소년센터	25	2021.7.1~2023.6.30	850,800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22	2022.1.1~2023.12.31	1,431,899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2022.4.1~2024.12.31	663,097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5	2021.7.1.~2023.6.30	246,800
(사) 홍사단			
광진청소년센터	29	2020.7.1~2023.6.30	900,000
화곡청소년센터	25	2022.1.1~2023.12.31	928,200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2021.7.1~2023.6.30	663,096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5	2020.7.1~2023.6.30	246,800
(재)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망우청소년센터	48	2021.1.1~2023.12.31	745,000
용산일시쉼터	9	2023.1.1~2024.12.31	610,578
서북이동쉼터	8	2023.1.1~2024.12.31	467,851
서남이동쉼터	7	2023.1.1~2024.12.31	467,590
(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드림센터	29	2022.7.1~2025.6.30	1,740,414
드림일시쉼터	10	2022.7.1~2025.6.30	559,830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5	2022.7.1~2025.6.30	246,8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	2021.7.1~2023.6.30	2,184,217
(학) 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마포청소년센터	32	2022.1.1~2023.12.31	685,000
문래청소년센터	40	2022.1.1~2023.12.31	652,800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	2021.7.1~2023.6.30	663,096
(사) 인터넷꿈희망터			
동북이동쉼터	8	2023.1.1~2024.12.31	473,265
동남이동쉼터	8	2023.1.1~2024.12.31	469,491
청소년자립지원관	8	2022.12.26~2024.12.25	481,731

- 위와 같은 다수수탁 또는 청소년시설을 특정 청소년단체가 독과점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청소년단체가 경쟁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노력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는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더 이상 혁신적인 서비스나 발전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특정 청소년단체가 다수의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우, 특정 청소년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평생교육국은 청소년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짐.
 - 셋째, 독과점 상태에 있는 청소년단체는 새로운 청소년단체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신규 청소년단체들은 수탁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며, 이는 혁신이 없어지고, 효율성의 저감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짐.
-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 또는 대책이 요구되며, 특정 청소년단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민간단체들의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민간의 경쟁과 다수수탁의 제한을 통해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 동의안별 세부검토

1)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푸른나무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센터(이하 ‘금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30길 54(시흥2동)
- 개관일자 : 2004.9.1.
- 시설규모 : 부지 6,268㎡ / 건물 5,056㎡(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해양안전체험센터,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78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16백만원, 운영비 424백만원, 사업비 1,357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1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금천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진흥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금천청소년센터는 2013년부터 재단법인 푸른나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2층 지상3층의 시설로, 2023년 현재 28명(정규직21명, 비정규직 7명)의 직원이 30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91개 프로그램(8개 분야, 35개 사업, 9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금천청소년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수영장, 샤워실, 의무실, 강사대기실	1,173
MEZZANINE층	피아노실, 소리고운, 중앙통제실, 창고, 미화원 휴게실	339
지하1층	소극장, 무용실, 대안학교, 해양안전체험센터, 방과후아카데미	1,396
지상1층	체육관, 헬스장, 음악실, 상담실, 관장실, 사무실 등	1,127
지상2층	햇살터, 금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치활동실	421
지상3층	공조실, 기타	42

메자닌 층(Mezzanine) :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흔히 극장 좌석 배치도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준층’이라고도 불리며, 복층 원룸이나 복층 오피스텔의 2층 공간도 실제로는 메자닌에 가까움.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1	3	4	7	6	5	0	0	0	0
현원	28	21	1	1	1	1	3	10	4	0	0	7	7	0

〈 금천청소년센터의 사업 체계도 〉



출처 : 2022년 금천청소년센터 성과내역의 도식화

〈 “시립금천청소년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1차 2004.07.01.~2007.06.30. (재)자광재단 (신규위탁)
- 2차 2007.07.01.~2010.06.30. 금천구 (관리이양)
- 3차 2010.07.01.~2013.06.3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재위탁)
- 4차 2013.07.01.~2016.06.30. (재)푸른나무청예단 (재위탁)
- 5차 2016.07.01.~2018.06.30. (재)푸른나무청예단 (재계약)
- 6차 2018.07.01.~2021.06.30. (재)푸른나무청예단 (재위탁)
- 7차 2021.07.01.~2023.06.30. (재)푸른나무재단 (재위탁)

〈 최근 3년간 “시립금천청소년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2,878,269	2,769,179	109,090	96.2%
2021	2,791,875	2,679,261	112,614	96.0%
2020	3,006,461	2,876,913	129,548	95.7%

- 금천청소년센터의 위치는 금천구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고, 1차선 도로의 끝에 위치(호암산 서측 끝자락)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의 협소, 셔틀의 회차공간 부족으로 셔틀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지역 주민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천청소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접근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위치도 〉



- 금천청소년센터는 대안교육기관 원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바리스타 자격취득 과정, 검정고시 과정, 특성화 사업, 인문학 수업, 체육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교육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에서 신뢰성 있는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 서울특별시는 안정적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와 교육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 서울특별시가 청소년시설을 통해 청소년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대안교육기관의 직접 운영 보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은지, 서울특별시가 공공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한 시립시설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등 청소년센터의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다각적이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금천청소년센터는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등록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천청소년센터는 정원과 현원은 28명을 유지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 원두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 청소년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중 인건비를 중복 수령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2년 금천청소년센터의 사업은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22만 4천 여명이 이용하였고, 이용자 중 64.9%가 생활체육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영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12만 2천여명으로 전체이용자의 54.4%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3.2%, 목적사업 4.8% 수준임.

〈 2022년 금천청소년센터의 성과 〉

(단위:명,%)

구분 / 사업 / 프로그램		실적(명)	비율(%)
총 합		224,501	100.0%
시설사용	시설대관, 생활체육시설대관	2,614	1.2%
교육사업	창의력, 언어, 음악(7,124명 중 피아노 6,476명), 취미, 미술 등	7,256	3.2%
생활체육사업	수영(122,189명, 전체이용수 대비 54.4%), 무용, 체육, 방학특강	145,689	64.9%
목적사업	청소년 자치·인권·보호·지원·성장지원 사업 등	10,703	4.8%
상답사업	학교폭력 예방프로젝트(캠페인)	1,812	0.8%
기타사업	기타수입(키분실), 회원카드, 식당, 사물함, 휴카페, 임대관리비아지트	17,663	7.9%
보조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20개 사업	38,764	17.3%

- 금천청소년센터의 수영 편중현상 및 핵심사업(목적사업, 교육사업)의 과소이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체계가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하고 있어, 위탁목적과 현장평가의 괴리감이 큰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금천청소년센터의 2022년 평가결과(2021년 실적) 〉

- 각 사업별 계획서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매우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피드백하는 과정 역시 매우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목표에 필수적인 항목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우수하며, 목표산출 근거도 매우 명확함.
- 단위사업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자체평가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피드백하는 과정이 매우 우수함.
- 금천청소년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의 구체성 역시 매우 우수함.

출처 : 의안번호 676번 부속서류(시립금천청소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성과보고서)

- 금천청소년센터의 상담사업은 실제 상담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만 추진하고 있는바, 기능이 없는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실제 추진하는 내용에 맞는 사업명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지침은 중복 프로그램 참여를 제외한 1인, 공간 및 프로그램의 구분없이 방문자 1인을 실인원으로 산정하여 이용률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안교육기관 원두의 프로그램(동아리, 진로성장, 자기개발 등)별 인원수를 각각 산정하고, 회원카드발급, 식당이용, 사물함 사용, 아지트 등 중복산정 인원을 별도로 계수하여 총 이용인원과 청소년 이용률을 산정하고 있어, 성과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 산정기준 〉

○ 이용자 수 기준관리

• 실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일간 중복 및 프로그램 간 참여 중복을 제외한 개인(자연인) 1인을 이용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 합산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시설에서는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용한 공간의 구분 없이 방문자 1인을 1인으로 산정

*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실 인원을 계산할 경우 2일간 이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수, 일수에 구분 없이 해당 일별 참가자 수로 산정

• 연인원의 산정기준

* 연간 이용자 수의 연인원 계산 시 일별 이용자를 합산하여 산정. 단, 요구기준에 따라 일별 이용자의 기준은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산정

출처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지침(2022, 여성가족부)

○ 금천청소년센터 사업계획서의 청소년 대상 사업은 소수이나, 성과평가보고서는 다수의 청소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천청소년센터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9시~15시)의 프로그램도 청소년 사업으로 간주하여 청소년대상 사업으로 계수하고 있음.

○ 방학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 사업으로 계수 하는 것은 타당하나,

-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존에 부합하는지, 금천청소년센터의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의 집계방식이 적절한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평생교육국이 부적정한 성과집계 방식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금천청소년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안내 발췌 〉

프로그램	시간	대상	비고(원)
새벽	06:00~06:50	초4학년 이상 성인 남녀 누구나	월~토(주6회토/자유수영) 성인 78,100 청소년(초,중,고) 64,000
아침	07:00~07:50		월~금(주5회) 성인 73,700 청소년(초,중,고) 60,000
매화	09:00~09:50	성인 남녀 및 청소년	월,수,금(주3회) 성인 56,100 청소년(초,중,고) 45,000
난초	10:00~10:50		화,목(토/자유수영) 성인 51,700 청소년(초,중,고) 40,000
백합	11:00~11:50		※10시 난초반 월수금 상급자만 등록 가능
아쿠아로빅	14:00~14:50		월,수,금(주3회) 성인 57,200 청소년(중,고) 45,000
물개	성인	성인 여성	화,목(주2회) 성인 41,800
	유아	만5세~초3학년	월,수,금(주3회) 40,000

출처 : 금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cyc.or.kr>)

- 금천청소년센터는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수영에만 집중하고,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소홀히 운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인대상 사업을 청소년사업으로 변형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금천청소년센터는 주요 사업(청소년 대상사업)과 부수적 사업(지역기여 사업)을 구분하여 주요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금천청소년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은 총 3개의 시립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관리에 있어 노원청소년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도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 성과부풀리기, 인건비의 중복 계상 등이 수탁기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각각의 시립시설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 평생교육국의 명쾌한 성과기준 제시와 함께 세심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푸른나무재단의 시립청소년시설 수탁현황 〉

	시설명	수탁기간	위탁자
1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1999.07.01.~2023.06.30	서울특별시
2	시립노원청소년센터	1997.06.20.~2024.12.31	서울특별시
3	시립금천청소년센터	2013.07.01.~2023.06.30	서울특별시

2)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이하 '목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 개관일자 : 1988.3.17.
 - 시설규모 : 부지 5,744㎡ / 건물 6,203㎡(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극장, WAWA청소년아지트,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2026.6.30.)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871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999백만원, 운영비 687백만원, 사업비 2,736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44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목동청소년센터는 1988년에 개관할 때부터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유지재단')에서 35년간 수탁하고 있으며,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시설로, 41명의 직원이 58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186개 프로그램(7개 분야, 37개 사업, 18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m²)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지상4층	헬스장	346.5m ²
지상3층	소체육관, 프로그램실, 관장실, 통합사무실, 휴게실	927.3m ²
지상2층	유아체능단, WAWA 놀이터, 행복한 교실, 다정한 교실, 밴드 연습실	979.5m ²
지상1층	프로그램실, 수영장, 대체육관, 안내데스크, 청소년극장, WAWA 청소년아지트,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청소년동아리실, 휴(休)공간, 기구 필라테스, 사무실	3,315.7m ²
지하1층	기관운영실	594.9m ²

〈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인력 현황 〉

(2023년 3월 기준,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계약	기타
정원	28	1	1	1	3	4	7	6	3	2	0	0
현원	41	1	1	1	1	2	6	6	3	7	13	0

〈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1988.03.30.~1993.03.28. : 1차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1993.03.29.~1996.03.28. : 2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1996.03.29.~1999.03.28. : 3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1999.03.29.~2002.03.29. : 4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02.03.30.~2005.03.29. : 5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05.03.29.~2008.03.28. : 6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08.03.29.~2011.08.30. : 7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11.09.01.~2013.06.30. : 8차 재계약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13.07.01.~2018.06.30. : 9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16.07.01.~2018.06.30. : 10차 재계약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18.07.01.~2021.06.30. : 11차 재위탁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2021.07.01.~2023.06.30. : 12차 재계약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목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진로·직업, 방과후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목동 청소년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조계종유지재단은 35년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 많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원 및 강사 채용, 세금(부가가치세), 계약, 재물조사 미흡, 자산대장 불일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지적과 개선이 반복되고 있는바, 기본적 운영역량이 미흡한 것인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의 지적사항 〉

구분	지적사항
2020년 서울시 지도점검 (2020.10.6.)	① '19년 기능보강공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분 미신고 ② 출장내역 및 차량운행 불일치 ③ 구입물품 자산대장 등재 누락
2021년 서울시 지도점검 (2021.5.13.~14.)	① 계약관련 서류 사후 내부분서 첨부 ② 재물조사 미흡 ③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 미흡 ④ 업무추진비 진행 지출결의서 기한 준수 미흡 ⑤ 강사채용 관련 미흡 ⑥ 승인된 시설 이용료 이상의 강습료 공지 및 미승인 프로그램 이용
2022년 서울시 지도점검 (2022.7.8.)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범위 외 지출

- 목동청소년센터의 2023년 사업계획은 생활체육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은 1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중 청소년수영 3만 5천명, 아지트 방문자 3만명, 미래청소년(사업설명 누락) 2만 여명 등을 제외하면, 직접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전체 이용자의 9% 수준인바,
 - 생활체육의 과다 및 목적사업의 과소로 인해 청소년센터의 설치목적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2023년 사업계획〉

분야 / 사업명		사업		분야	
		인원	비율	인원	비율
7개 분야 37개 사업 186개 프로그램		628,306	100%	628,306	100%
교육문화사업	언어사회	11,520	1.8%	86,388	13.7%
	외국어교육	3,456	0.6%		
	미술교육	16,160	2.6%		
	수학과학교육	9,216	1.5%		
	음악교육	13,104	2.1%		
	오감신체활동	9,408	1.5%		
	취미문화	17,664	2.8%		
	특강	5,760	0.9%		
	기타	100	0.0%		
생활체육사업	강습활동	30,240	4.8%	301,896	48.0%
	청소년시민스포츠활동	248,688	39.6%		
	체육시설활용	22,968	3.7%		
목적사업	청소년조직	5,655	0.9%	140,758	22.4%
	학교연계	3,660	0.6%		
	체험활동	445	0.1%		
	수련활동인증	340	0.1%		
	지역연계	38,400	6.1%		
	공모사업	4,050	0.6%		
	4차산업집중탐구활동	14,976	2.4%		
	국제언어활동	1,728	0.3%		
	미래청소년양성	20,400	3.2%		
	청소년스포츠	35,544	5.7%		
	청소년생존수영	1,920	0.3%		
	청소년농구	7,200	1.1%		
	청소년방학특강	6,440	1.0%		
청소년상담사업	상담지도사업	360	0.1%	360	0.1%
특성화사업	청소년조직	1,400	0.2%	2,600	0.4%
	학교연계	200	0.0%		
	지역연계	750	0.1%		
	공모사업	250	0.0%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97,170	15.5%	97,471	15.5%
	보조금사업비	301	0.0%		
기타사업	기타사업	33	0.0%	33	0.0%

- 특히, 수영의 경우 생활체육사업과 목적사업에 흩어져 배치되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23년 예상되는 전체이용자 중 28.6%가 수영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이용자 중 18.1%가 성인 수영으로, 9% 수준인 목적사업의 이용자보다 2배 더 많은 규모로,
 - 성인대상 수영센터인지 청소년센터인지 본질이 모호한바, 청소년센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목적사업 중심의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수영프로그램 현황 〉

(단위: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계획인원	비율
전체 이용자 계획		628,306	100.0%
수영 이용자 계획		179,688	28.6%
유아수영(A)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월수금)	864	0.1%
유아수영(B)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화목)	1,152	0.2%
주니어수영(A)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영법교정(월수금)	5,760	0.9%
주니어수영(B)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영법교정(화목)	3,840	0.6%
어린이수영단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영법교정	2,880	0.5%
조기건강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	14,400	2.3%
조기직장인건강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월수금)	7,200	1.1%
조기직장인건강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화목)	11,520	1.8%
청소년수영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월수금)	1,200	0.2%
청소년수영	단계 수영지도, 물익히기, 수중놀이(화목)	240	0.0%
성인수영	단계 수영지도, 영법교정, 자기안전익히기	36,000	5.7%
저녁수영(A)	단계 수영지도, 자기안전익히기(월수금)	7,200	1.1%
저녁수영(B)	단계 수영지도, 자기안전익히기(화목)	4,320	0.7%
성인핀수영	단계 핀수영사용법 기초부터 상급	720	0.1%
효도수영	단계 수영, 자기 안전익히기	4,320	0.7%
아쿠아로빅	수중 운동을 통한 유연성과 원활한 신진 촉진	28,800	4.6%
수영장월정기권(월토)	회원 및 비회원을 위한 평일 자유수영	4,608	0.7%
수영장일일입장	회원및비회원을위한평일자유수영	7,200	1.1%
청소년수영	단계 수영지도, 자기안전익히기, 교정	23,040	3.7%
소그룹청소년수영	단계 수영지도, 자기안전익히기, 교정	24	0.0%
돌고래수영	단계 수영지도, 각종영법 및 인명구도법 지도	8,640	1.4%
토요청소년수영	토요 저녁시간을 이용한 청소년 수영	3,840	0.6%
생존수영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생존수영	1,920	0.3%

- 청소년센터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사업의 수로 해당시설의 청소년사업의 규모를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의 이용자 특히, 행사참여, 설문조사, 홍보대상, 매점이용자 등 단순이용자를 제외한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청소년사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조계종유지재단의 목동청소년센터 장기수탁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국은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부족과 공모 시 신청 법인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수탁을 허용하고 있음.
 -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무관한 행정사무를 민간의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관의 명목과 책임하에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 평생교육국의 장기수탁 허용 이유인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부족’은 민간 위탁의 조건인 “민간의 경쟁”이 없다는 뜻으로 목동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민간의 경쟁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적은 예산으로 적정수준의 사업성과 확보)에는 경쟁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 담보라는 전제가 필요한바, 목동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이 목적사업에 있어 적정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지양해야 하나,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현실화 후 강력한 통제로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인바, 청소년시설의 공익성 강화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3)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중랑 청소년센터(이하 ‘중랑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하여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 개관일자 : 1999.10.30
- 시설규모 : 부지 7,347㎡, 건물 12,453.21㎡(지하 2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똑딱이창의공작소, 헬스장, 골프교실, 강당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807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47백만원, 운영비 297백만원, 사업비 951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212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중랑청소년센터는 1999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4년간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맹(이하 ‘청소년연맹’)에서 수탁했으며, 본관과 신관 2개의 건물로 구성되고, 33명이 28억원의 예산으로 114개의 프로그램(5개 분야, 18개 사업, 1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m²)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본관		2179.78
4층	동고동락, 골프교실, 휴게실, 사무실, 똑딱이스튜디오, 기타	497.57
3층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교육실, 고드림학교, 관장실, 비품실,	411.8
2층	강당, 안내데스크/문화공간	544.78
1층	짱실, 똑딱이 창의공작소, 식당, 기타	725.63
신관		1802.98
4층	무한지대 1, 마루, 가람, 아라	396.99
3층	다감존 1, 무지존, 모임터, 사랑터,	395.82
2층	헬스존/강사실, 샤워실/탈의실, 기타	513.37
1층	똑딱이 창의공작소, 기타	496.8

〈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1999.7.1. ~ 2002.6.30. : 1차 [(사)한국청소년연맹]
- 2002.7.1. ~ 2005.6.30. : 2차 재위탁[(사)한국청소년연맹]
- 2005.7.1. ~ 2008.6.30. : 3차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08.7.1. ~ 2011.6.30. : 4차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1.7.1. ~ 2013.6.30. : 5차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3.7.1. ~ 2016.6.30. : 6차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6.7.1. ~ 2018.6.30. : 7차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2018.7.1. ~ 2021.6.30. : 8차 재위탁 [(사)한국청소년연맹]
- 2021.7.1. ~ 2023.6.30. : 9차 재계약 [(사)한국청소년연맹]

〈 최근 3년간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2,738,975	2,460,810	278,165	89.8%
2021	2,592,304	2,261,878	330,426	87.3%
2020	3,017,514	2,713,495	304,019	89.9%

- 중랑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수련활동, 진로·직업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진흥을 위해 안정적 전문적 운영 필요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중랑청소년센터는 지원형 청소년시설로 수영장이 없으며, 자립형 청소년 시설에 비해 비교적 청소년활동에 집중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인의 이용률이 낮고, 청소년의 이용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수익사업의 부재로 인해 시설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립형 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센터의 지원형/자립형 구분 〉

- 구분기준 : 수익사업 시설의 유무 (수영장 유무 등)
- 청소년센터의 유형별(지원형, 자립형) 분류
 - 자립형시설 (14개소,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센터)
 - 문래청소년센터, 목동청소년센터, 수서청소년센터, 노원청소년센터, 강북청소년센터, 구로청소년센터, 성북청소년센터, 마포청소년센터, 은평청소년센터, 성동청소년센터, 금천청소년센터, 망우청소년센터, 동대문청소년센터, 서대문청소년센터
 - 지원형시설 (7개소, 수영장이 없는 청소년센터)
 - 서울청소년센터, 강동청소년센터, 중랑청소년센터, 창동청소년센터, 광진청소년센터, 화곡청소년센터, 보라매청소년센터

〈 2023년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사업계획서 요약 〉

(단위:천원)

분야 / 사업명		사업		분야	
		계획인원	비율	계획인원	비율
총 계		303,086	100.0%	303,086	100.0%
교육문화	문화강좌	11,616	3.8%	11,616	3.8%
생활체육	생활체육	2,170	0.7%	2,170	0.7%
청소년	학교연계	84,400	27.8%	267,811	88.4%
	청소년동아리	4,230	1.4%		
	MAKER	1,345	0.4%		
	F.A.M	14,410	4.8%		
	ECO	2,150	0.7%		
	G.Y.M	16,000	5.3%		
	진로사업	51,664	17.0%		
	참여인권사업	2,675	0.9%		
	특성화사업	45,325	15.0%		
	인성사업	3,672	1.2%		
	대안교육	40,440	13.3%		
마을사업	1,500	0.5%			
상담	상담사업	3,600	1.2%	3,600	1.2%
기타	홍보사업	15,925	5.3%	17,889	5.9%
	지도력향상	664	0.2%		
	시설운영	1,300	0.4%		

〈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연도별 공모사업 현황 〉

시설명	평균	합계	2022	2021	2020
중랑청소년센터	20.3	61	22	19	20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공모사업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며, 목적사업을 수행할 인력 외 비정규직을 확충해야 하나, 중랑청소년센터는 정원의 한계로 인해 정규직은 과소하게 줄이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늘리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어, 인적 안정성 더 나아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32	32	1	1	1	3	5	11	6	4	-	-	-	0
현원	33	19	1	1	1	2	2	8	1	1	2	14	14	0

- 한편,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인건비 중복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탁사무의 축소를 의미하는바, 위탁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중랑청소년센터를 포함한 총 7개의 시립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은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매우 유능한 단체이거나, ‘다수·장기수탁’이라는 실적을 활용하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시장에서 독점 또는 과점을 확대하는 청소년 단체 등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평생교육국은 장기 및 다수수탁을 방관하고 있으며,
 - 비경쟁적 구조 속에서 소수의 거대 청소년단체들의 장기·다수 위탁이 지속·반복하면 지방의 소도시들과 같이(수탁단체가 없어 수의계약과 유사한 형식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후 반복) 독과점 발생 후 고비용·저효율·비능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들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사료됨.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수탁한 시립청소년시설 현황 〉

연번	수탁사무(시설)명	수탁기간	위탁자
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25년 (1998.03.01. ~ 2024.12.31.)	서울특별시
2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4년 (1999.04.01. ~ 2023.12.31.)	서울특별시
3	시립중랑청소년센터	24년 (1999.09.01. ~ 2023.06.30.)	서울특별시
4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12년 (2011.03.01. ~ 2023.06.30.)	서울특별시
5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12년 (2011.09.01. ~ 2024.06.30.)	서울특별시
6	시립강동청소년센터	12년 (2011.11.07. ~ 2025.06.30.)	서울특별시
7	시립구로청소년센터	5년 (2018.02.23. ~ 2025.12.31.)	서울특별시

- 민간위탁 시장의 독과점은 신규 청소년단체의 참여를 제약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독과점의 확대는 시민의 피해(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하락 등)로 이어지는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청소년단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경쟁 청소년단체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특정 청소년단체의 장기수탁과 다수수탁이 반복·지속될 때, 수탁기관과 담당공무원 간 관계는 사무관계를 넘어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지휘·감독 또는 지도·점검이 불가능해지고
 - 더 나아가 청소년단체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인간관계를 이용한 로비를 시도하고, 공공기관은 특정 청소년단체를 보호하고 협력하는 상황(포획이론, capture theory)이 발생하여 결국 공익성과 공공성이 사라지고, 청소년단체의 이익만이 존재할 수도 있는바, 장기·다수 수탁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포획이론 capture theory

- 규제외 한계에 관한 이론(George Stigler, 1911~1991)으로, 규제자(정부)가 피규제자인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규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정부 실패의 한 현상을 말함.
- 포획이론에서 포획을 당하는 주체는 규제자이고, 포획하는 주체는 피규제자이다. 피규제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를 하여, 규제기관은 피규제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곳으로 바뀌게되며, 이로 인해 시민 또는 개인의 이익은 결국 무시되고 현상.

4)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 창동청소년센터(이하 ‘창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하여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창동)
- 개관일자 : 2005.10.29.
- 시설규모 : 부지 14,246.98㎡ / 건물 5,016㎡(지상 4층)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오픈플레이스, 루프탑, 요리교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34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49백만원, 운영비 230백만원, 사업비 846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20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창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진로·직업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동청소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창동청소년센터는 4층 규모의 시설로, 2008년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이하 '광운대학교')에서 15년간 운영 중이며, 21억 3천4백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25명이 104개의 프로그램(4개 분야 19개 사업 104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창동청소년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층별	시설명	면적(㎡)
합계		2,663.67
1층	활동장,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773.36
2층	피아노실, 공연연습실, 드럼실, 음악연습실, 강의실, 강사대기실	517.79
3층	열린쉼터, 자유공방, 오픈 플레이·메이커·오픈미디어, 마을배움터	660.30
4층	사무실, 교육실, 큰모임터, 요리실, 관장실, 방과후아카데미	712.22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프로그램 수)
창동청소년센터	4개 분야, 18개 사업, 104개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5), 잉글리시아카데미
목적프로그램	초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중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학교연계(10), 청소년주도참여활동(13), 문화체험활동(19), 특화프로그램(10), 지역연계(3), 연구프로그램(2)
특별지원보조금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찾아가는청소년센터(6), 유스데이운영지원(8), 특성화 프로그램(15), 배치지도사, 마을속청소년코디네이터, 기타 프로그램보조금(3)

〈 “창동청소년센터” 인력 현황 〉

(2023년 3월기준,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공공	소계	계약	사업	프론티어
정원	27	27	1	1	1	3	4	8	7	1	1	0	0	0	0
현원	25	16	1	1	0	2	2	5	5	0	0	9	2	1	6

〈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2005.07.27.~2008.07.26. : 1차 [광운대학교-도봉아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
- 2008.07.27.~2011.08.31. : 2차 재위탁 [광운대학교]
- 2011.09.01.~2013.06.30. : 3차 재계약 [광운대학교]
- 2013.07.01.~2016.06.30. : 4차 재위탁 [광운대학교]
- 2016.07.01.~2018.06.30. : 5차 재계약 [광운대학교]
- 2018.07.01.~2021.06.30. : 6차 재위탁 [광운대학교]
- 2021.07.01.~2023.06.30. : 7차 재계약 [광운대학교]

〈 최근 3년간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5,392,101	3,992,244	1,399,857	74.0%
2021	4,169,009	3,304,173	864,836	79.3%
2020	3,846,366	2,976,424	869,942	77.4%

- 창동청소년센터는 2023년 목적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66.7%)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 목적사업의 계획인원(91,772명) 중 공모사업, 타 기관 위탁사업 또는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방과 후 아카데미(1만 8천여명), 청소년 공간제공 사업(청소년전용공간 ‘영토’ 2만 4천명), 홍보사업(2만명) 등을 제외하면,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화사업의 경우 192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수 대비 과소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목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3년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사업계획은 계획인원 비율 〉

(단위:천원)

분야/사업명		사업		분야	
		계획인원	비율	계획인원	비율
총 계		137,571		137,571	
교육사업	평생교육	22,666	16.5%	27,238	19.8%
	잉글리시아카데미	4,572	3.3%		
목적사업	초등방과후아카데미	9,200	6.7%	91,772	66.7%
	중등방과후아카데미	9,200	6.7%		
	학교연계	3,840	2.8%		
	청소년주도참여활동	10,340	7.5%		
	문화체험활동	36,300	26.4%		
	특화사업	192	0.1%		
	지역연계	22,500	16.4%		
	연구사업	200	0.1%		
특별지원 보조금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0.7%	17,201	12.5%
	찾아가는청소년센터	1,000	0.7%		
	유스데이운영지원	500	0.4%		
	특성화사업	14,389	10.5%		
	배치지도사	12	0.0%		
	마을속청소년코디네이터	300	0.2%		
	기타사업보조금	1,360	1.0%		

- 창동청소년센터는 수영장이 없는 지원형 청소년센터로, 2022년부터 공모 사업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 대비 59.3% 수준으로 정규직의 비율을 낮게 운영하고 있고,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활용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적정한 인력의 운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창동청소년센터” 정원 대비 현원 비율 〉

(2023년 3월기준, 단위:명)

구분	정원	현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비고
총계	27	25	92.6%	2명 과소
정규직	27	16	59.3%	11명 과소
비정규직	0	9	-	9명 과다

〈 최근 3년간 “창동청소년센터”의 공모사업 현황 〉

연도	사업수	공모사업 명
2022	12개	서울-원주 청소년문화교류사업, 서울시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희망캠프, 지지요(지구를지키는요원들), 대학민국청소년박람회, 개(開)판5분전프로젝트, 도봉구학생회네트워크‘도통’, 도봉구청소년참여예산제, 도봉혁신교육지구 ‘로하우’, 지정평생학습관, 청소년 송캠프, 즐거운 방과후 교실,
2021	3개	스마트 멀티미디어 활용 체력증진사업, 도봉혁신교육지구 ‘로하우’, 청소년박람회
2020	6개	서울-거제역사문화교류캠프, 희망캠프 ‘달고나’, 서울시동아리지원사업, 지정평생학습관, 개(開)판5분전프로젝트, 창수네 도레미송

- 평생교육국은 거주지 인근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ONE-STOP 서비스’ 추진을 위해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2개 센터 시범사업)하였고,
 - 창동청소년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2023년 현재 창동청소년센터는 평생교육, 방과 후 아카데미, 진로, 자치·참여·봉사, 발달장애 및 소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로봇특화사업, 미디어 메이커, 공작, 과학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센터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다른 시립시설 간 기능과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시설 간 고유기능이라는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청소년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별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또는 지금 보다 과감한 통합 추진 등으로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는 전용 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센터로 건축된 건물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3]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 창동청소년센터는 동종시설 중 가장 작은 센터로, 21개 청소년센터의 평균 면적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나, 청소년센터 중 가장 많은 공공시설(3개소)을 입주시키고 있어, 청소년활동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시설간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양한 구립 및 시립시설이 창동청소년센터 건물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 공간과 역할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져, 이미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정체성 명확화가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센터의 연면적 및 입주시설 현황〉

(단위: m², 명)

연번	시설명	연면적	수용정원	청소년센터 외 공공시설
	평균	5,319	782	
1	노원청소년센터	8,246	1,000	-
2	성동청소년센터	6,703	760	상담복지센터
3	수서청소년센터	6,235	865	상담복지센터
4	목동청소년센터	6,203	810	-
5	서대문청소년센터	5,805	752	
6	성북청소년센터	5,726	802	-
7	문래청소년센터	5,594	800	

연번	시설명	연면적	수용정원	청소년센터 외 공공시설
8	망우청소년센터	5,475	850	-
9	서울청소년센터	5,329	800	상담복지센터
10	강북청소년센터	5,262	940	상담복지센터
11	광진청소년센터	5,198	804	I Will센터, 성문화센터
12	강동청소년센터	5,076	759	상담복지센터
13	마포청소년센터	5,044	750	I Will센터
14	구로청소년센터	4,986	700	
15	화곡청소년센터	4,973	701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	금천청소년센터	4,971	723	상담복지센터
17	동대문청소년센터	4,929	721	-
18	은평청소년센터	4,846	727	상담복지센터
19	보라매청소년센터	4,620	720	인터넷, 상담복지, 활동진흥
20	중랑청소년센터	4,299	732	상담복지, 성문화센터
21	창동청소년센터	2,171	713	상담복지, I Will센터, 성문화

○ 창동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인 광운대학교는 총 6개의 시립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종시설을 다수 위탁받는 것이 아닌 청소년센터와는 다른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시립시설(성문화센터, 아이월센터, 진로센터, 상담복지센터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광운대학교가 다양한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창동청소년센터의 특징인 비정규직 등(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사업추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민간 청소년단체 간 경쟁이 없어, 미흡한 전문성에도 시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다각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장기수탁 및 다수수탁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청소년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법인 광운학원 학운대학교의 시립시설 수탁현황 〉

	수탁사무(시설)명	수탁기간	위탁자
1	시립창동청소년센터	18년 (2005.07.27.~현재)	서울특별시
2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15년 (2007.10.19.~현재)	서울특별시
3	시립강북청소년센터	12년 (2011.05.01.~현재)	서울특별시
4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0년 (2012.04.01.~현재)	서울특별시
5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4년 (2019.01.01.~현재)	서울특별시
6	시립성북청소년센터	3년 (2020.07.01.~현재)	서울특별시
7	구립강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년 (2011.05.01.~현재)	강북구

5)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푸른나무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한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 사업
 -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
 -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 사이트 관리 운영
 - 그 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개관일자 :
- 시설규모 : 연면적 1,395.71㎡, 부지면적 529.6㎡ (지하1층, 지상5층)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일반시민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78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21백만원, 사업비 102백만원, 물건비 145백만원, 경상이전 206백만원, 자본지출 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미디어센터는 청소년특화시설로 시설은 총 5층 규모이며, 28명의 직원이 15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55개 프로그램(7개 분야, 35개 사업, 5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m²)

층	사용/활용현황
총괄	연면적 1,395.71m ² , 부지면적 529.6m ² (지하 1층, 지상 5층)
5층	사진스튜디오
4층	관장실/업무지원팀, 루프탑 행사장
3층	스튜디오(빈백영화관), 미디어창작 작업실, 음원창작 녹음실, 미디어교육실, 사무실, 상담실
2층	회의실, pc zone, 청소년아지트, 미디어스쿨, 미디어장비실, 사무실
1층	동아리실, 스팟스튜디오, +크리에이터그라운드, 오픈스튜디오, 북카페/미디어전시/스마트체력증진공간
지하	보일러, 냉방기 등 설비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단기
정원	25	25	1	1	2	5	5	9	1	1	0	-	-	-
현원	28	16	1	-	1	1	4	7	1	1	0	12	9	3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의 미디어 제작, 미디어 과의존 해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문화예술문화와 진로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여,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올바른 미디어 문화확산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짐.

- 푸른나무재단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년간 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미디어라는 분야의 한정성과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미디어 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적었을 것으로 보이나,
 - 장기수탁의 장점(운영의 안정성 등)보다 단점(부속시설화, 선정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역량의 저하, 청소년 사업의 축소, 변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장기수탁으로 인한 특정시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장기간 유지하여 민간의 경쟁없이 또는 역량에 대한 검증없이 재차 미디어센터를 수탁하여 공공서비스의 혁신 가능성과 효용성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전문성을 위하여 장기수탁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1차 1999.07.01.~2002.06.3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규위탁)
- 2차 2002.07.01.~2005.06.3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재계약)
- 3차 2005.07.01.~2008.06.3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재계약)
- 4차 2008.07.01.~2011.06.3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재위탁)
- 5차 2011.07.01.~2013.06.3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재계약)
- 6차 2013.07.01.~2016.06.3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재위탁)
 - 푸른나무청예단 (재단명 변경/2014.04.26.)
- 7차 2016.07.01.~2018.06.30. : 푸른나무청예단 (재계약)
- 8차 2018.07.01.~2021.06.30. : 푸른나무청예단 (재위탁)
 - 푸른나무재단 (재단명 변경/2020.01.14.)
- 9차 2021.07.01.~2023.06.30. : 푸른나무재단 (재계약)

- 미디어센터는 개관할 때부터 미디어의 순기능 강화와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사회의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역할강화 요구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분리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를 설치했고, 현재는 미디어 순기능 강화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역기능 관련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 미디어센터의 역기능 관련 사업들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용역(전문 상담사 등을 활용)을 통해 상담 또는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미디어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간 정체적 정립과 명확한 업무의 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미디어 역기능 관련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공모사업 현황 〉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공모자 (지원기관명)	사업수행 인력수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및해소사업	2022.01~11	미디어 과의존 해소를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182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해소사업	2021.01~12	미디어 과의존 해소를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182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해소사업	2020.01~12	미디어 과의존 해소를 위한 심리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171
개인의 자기돌봄을 통한 마을성장 프로그램 토닥토닥	2022.04~12	자기돌봄을 위한 상담 및 미디어치료활동	용산구청	17
따사제_따뜻한사이버 세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021.05~11	미디어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용산구청	21
따사제_따뜻한 사이버세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020.04~12	미디어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용산구청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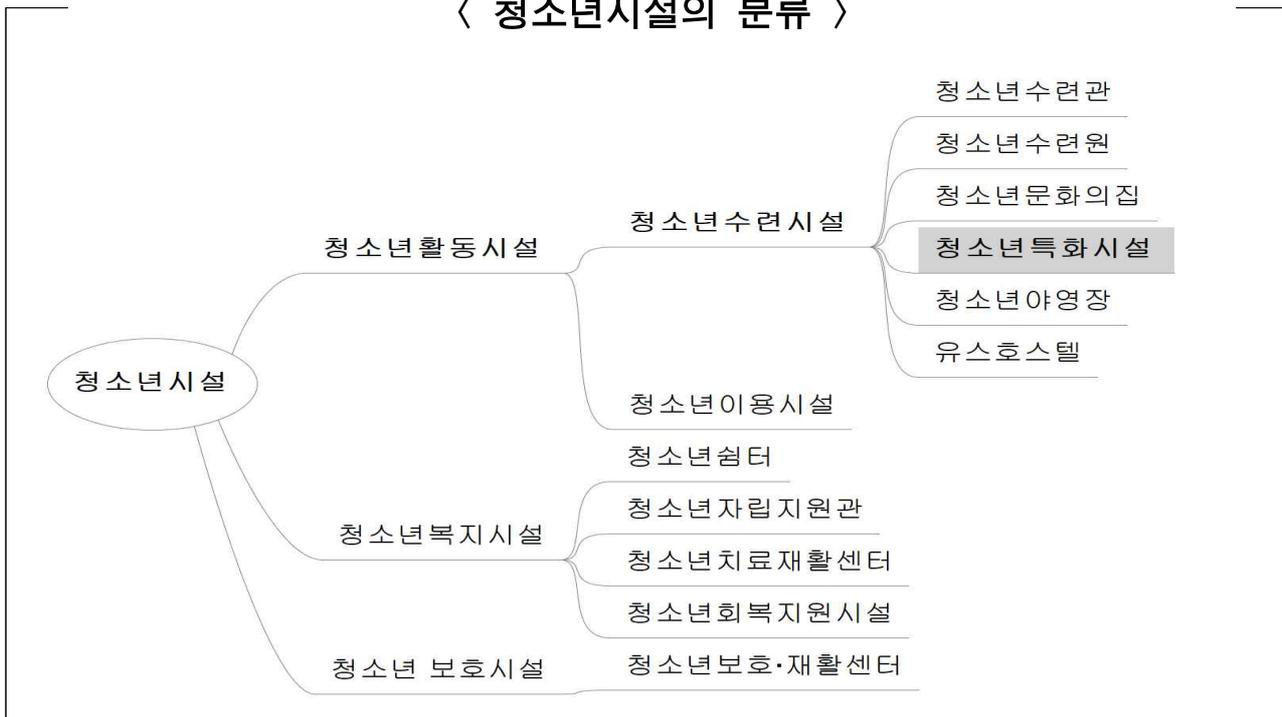
- 미디어센터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 특화시설로 재분류하고 있는바, 특화시설은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로,
 - 법령은 특화시설은 전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여성가족부는 특화시설의 예시로 영상미디어, 진로, 대안교육, 성문화, 국제교류, 자원봉사,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와는 달리 미디어 특화시설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http://www.mogef.go.kr>)

청소년특화시설

-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련시설
- 영상미디어, 진로 및 대안교육, 성문화, 국제교류, 자원봉사 등 특정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시설의 분류 >



출처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특화시설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한편, 특화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청소년활동 중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영재교육이 아닌 전문적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사업 중 미디어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뿐이며,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체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넓은 범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교육문화사업 중 교육사업 내역 〉

분야/사업/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교육문화사업	
청소년미디어체험(단체)	
①무인미디어체험	비대면 소규모 미디어 체험
미디어 콘텐츠교육사업	
②청소년 영화제작 전문그룹과정	영화교육과 제작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지원 과정
③청소년 디자인 전문그룹과정	디자인제작을 통해 디자인개념 이해, 자기표현 발달, 의사소통 능력기회 제공
④청소년뮤직비디오제작 전문그룹과정	뮤직비디오 제작, 교육기회 제공, 작품제작 통한 진로 탐색
⑤청소년 제작 심화 워크숍	청소년 제작자 대상으로 영상기획 및 제작 워크숍
청소년현장미디어네트워크사업	
⑥청소년기관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청소년기관 현장을 영상콘텐츠로 제작
⑦무빙 스튜디오카	이동 스튜디오카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체험
이미지기반콘텐츠사업	
⑧사진 스튜디오 촬영사업	일반대관, 셀프 스튜디오, 스타트업 지원
⑨이미지 작품 전시회	작품전시를 통한 미디어와 예술의 소통과 문화교류

6)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이하 ‘미래진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1999.12.18. (본관 준공 1982.7.11., 별관준공 2010.10.13.)
- 시설규모 : 부지 9,697㎡ / 건물 5,344.46㎡
- 주요시설 : 대강당, 중강당, 청소년카페, 미디어룸, 메이커스페이스룸, 디자인작업장, 어린이작업장, 프로그램실, 무용실, 합주실, 미니극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3.7.1. ~ 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82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91백만원, 운영비 339백만원, 사업비 1,127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225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직업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안정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생교육국은 본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 미래진로센터는 본관과 별관 2개의 건물로, 1999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24년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27명의 인력(정원 30명)이 30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34개의 프로그램 (3대 목표, 10대 전략,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본관

(단위: m²)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지하1층	합주실, 공연연습실, 전기실, 기계실,	212
지상1층	하자로, 요리스튜디오, 하모니식당, 어린이작업장, 카페 그레이서, 당직실, 쇼케이스(홀), 진로상담실, 디자인작업장, 워크룸, 하품방, 프로그램실, 어린이작업장,	626
지상2층	999클럽, 노마드, 미니극장, 운영지원부, 운영서고, 프로그램실, 미디어룸, 대기실	269
지상3층	333마루, 녹음실, 오디세이학교, 프로그램실, 운영창고, 프로그램실, 오디세이학교, 프로그램실, 운영서고	400

별관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지하1층	자전거공방, 옥외작업실, 목공방, 시설장비실, 기전실	327
지상1층	101공방, 코쿠킹스페이스, 카페그냥, 중앙홀	378
지상2층	무용실, 허브갤러리, 원탁방	233
지상3층	미디어룸, 아하센터, 복도홀	411
지상4층	다목적홀, 공연장, 대기홀, 옥외 테라스,	506
지상5층	공연장, 조정실, 프로그램실	90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정원	30	30	1	1	2	5	8	10	-	3	-	-	
현원	30	27	1	0	2	4	7	12	-	1	-	3	3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주요사업 〉

- **중점추진방향 1) 미래진로환경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강화 (가상세계, 1인 창업 등)**
 - 목 표 : 팬데믹 이후 변화에 맞추어 미래진로환경을 전망/대응하는 미래진로교육 프로그램 강화
 - 주요사업 : 청소년 크리에이터 아카데미(with 인스타그램), VR 오픈클래스, 진로찾기 인터뷰, 미래진로특강, 하자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미디어아트 오픈 클래스, 청소년 에듀투어 등
- **중점추진방향 2) 팬데믹 기간 중 약화된 청소년 진로탄력성 회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목 표 : 청소년의 협업/문제해결력/감정조절/의사소통/리더십/회복 탄력성 등 ‘소프트 스킬’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주요사업 : 내일진로상담소, 미래진로 러닝크루, 위 아 퓨처 메이커스, 글쓰기 작업장, 청소년 아트 플랫폼, 미래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소년 일경험 프로젝트 등
- **중점추진방향 3) 기업 연계 통한 미래일자리 발굴형 진로 프로그램 개발**
 - 목 표 : 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하여 안정적 채용과 기업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주요사업 : 지속가능한 지구 전환 프로젝트, 지역협력사업, 청소년 아트랩, 스팀교육 오픈 클래스, 어린이작업장, 대외협력사업 등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1999.07.01. ~ 2002.06.30. : 1차 최초위탁체결 [(학)연세대학교]
- 2002.07.01. ~ 2005.06.30. : 2차 재위탁 [(학)연세대학교]
- 2005.07.01. ~ 2008.06.30. : 3차 재위탁 [(학)연세대학교]
- 2008.07.01. ~ 2011.08.30. : 4차 재위탁 [(학)연세대학교]
- 2011.09.01. ~ 2013.06.30. : 5차 재계약 [(학)연세대학교]
- 2013.07.01. ~ 2016.06.30. : 6차 재위탁 [(학)연세대학교]
- 2016.07.01. ~ 2018.06.30. : 7차 재계약 [(학)연세대학교]
- 2018.07.01. ~ 2021.06.30. : 8차 재위탁 [(학)연세대학교]
- 2021.07.01. ~ 2023.06.30. : 9차 재계약 [(학)연세대학교]

〈 최근 3년간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	1,646,029	1,595,713	50,316	96.9%
2021	1,633,086	1,617,529	15,557	99.0%
2022	1,617,704	1,613,793	3,911	99.8%

- 우리 사회의 선호직업은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인식범위를 확장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접하는 등 많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진로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진로센터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체험 위주의 양적증가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진로·직업에 대한 민간의 공급은 급격히 축소된 상황으로, 공공시설에서 직업체험과 진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진로교육법」은 교육감에게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감이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구청별 25개 진로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3개소의 미래진로센터를 특화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행정력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진로교육법」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제9조(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 ※ 「진로교육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행정기관 등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제2조(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유형(강연형(질의응답형 포함), 방문형, 체험형(기능체험, 훈련체험, 직업체험, 취업체험), 상담형, 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등)이 있으며, 미래진로센터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 직업흥미나 적성검사, 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열거식·나열식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청소년의 흥미와 재능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프로그램만을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통상 민간위탁 시설의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의 30% 수준이나, 진로센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의 사업비 비율이 8.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낮은 사업비의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부진,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인력의 직접 운영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단위:천원)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평균	1,951,483	100%	1,081,552	55.4%	704,125	36.1%	165,806	8.5%
2022	1,930,059	100%	1,062,446	55.0%	722,613	37.4%	145,000	7.5%
2021	1,940,208	100%	1,104,211	56.9%	694,662	35.8%	141,335	7.3%
2020	1,984,182	100%	1,078,000	54.3%	695,100	35.0%	211,082	10.6%

- 다만, 매년 30개 이상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체험, 교육, 프로젝트, 연구 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3년 평균 1억 6천 5백만원의 사업비만이 사용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바, 적정수준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금의 과소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민간위탁금 보다는 기부·기탁 또는 민간기업의 후원 등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후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후원자를 위한 운영으로 공공성과 운영목적 상실할 수 있는바, 적정 규모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지, 민간위탁금의 규모를 늘려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예산집행, 복무 관리 등에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의 기본역량을 확보한 것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적에 대해 ‘조치 완료’도 매년 반복하고 있어, 조치의 효과성이 있는지 내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10.12	예산과목 초과집행	완료
	지출품의 절차 미흡	완료
	외부 용역업체 명절 선물 지급 부적정	완료
	복무관리 미흡	완료
2021.06.21	증빙서류 미첨부	완료
	지출과목 용도의 집행	완료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절차 미흡	완료
	복무관리 미흡	완료
	계단 미끄럼방지 장치 미설치	완료
	관용차량 대장관리 미흡	완료
2022.06.24	경력산정 시 전력조회 실시 미흡	완료
	자체 운영규정 내 휴직자 불이익 방지 미흡	완료
	지출의 예산집행 절차 미흡	완료

- 미래진로센터는 연세대학교가 24년 간 운영하였는바,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간 독점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역량있는 청소년 단체의 발굴·육성 등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시장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시설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1층
- 시설규모 : 183.49m²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47백만원(2023년, 국비 83백만원, 시비 16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7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창동성문화센터(이하 ‘창동성문화센터’)는 창동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광운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5명의 인력이 2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1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지상1층	교육실 3개소, 사무실 및 창고	183.49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5	5	-	1	-	1	-	3	-	-	-	-	-	-
현원	5	4	-	-	1	-	-	2	1	-	-	1	1	-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 현황 〉

- 교육사업 : Say체험관 성교육, Say찾아가는 성교육, 장애청소년성교육, 토요일 성문화놀이터, 부모교사성인권교육, 개성맛집
- 문화사업 : 성문화캠프,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학교축제지원, 테마가 있는 체험, 온오프알림
- 조직사업 : 성교육활동가, 열정성서, 네트워크

〈 최근 3년간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244,873	244,873	0	100.0%
2021	240,000	240,000	0	100.0%
2020	227,880	227,880	0	100.0%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성문화센터는 총 7개소이며,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 출장 성교육, 학부모 성교육, 거리 상담활동, 연구 및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 발달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출장 성교육, 거리 상담활동, 청소년 성교육관련 자료연구 및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성정보, 성문화 등이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성문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훈련된 전문인력과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창동성문화센터의 최근 3년간 실적보고서와 운영평가 결과서에는 만족도 조사만 있을 뿐 프로그램의 피드백과 이를 반영한 개선이 없으며,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으로, 프로그램의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2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실적 〉

(단위:건, 명)

구 분	세부항목	실적		대상별 인원				
		건수	인원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등
교육 프로그램	체험관교육	274	2,363	363	875	680	365	80
	찾아가는 성교육	1,001	11,430	-	6,995	3,436	926	73
	워크숍·교사연수	30	395	-	6	8	-	381
	기타	4	14	-	-	-	-	14
합 계*		1,309	14,202	363	7,876	4,124	1,291	548

- 창동청소년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실적은 ‘찾아가는 성교육’이 대부분이며, 성교육 전문가가 맞춤형 성교육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으나, 학교 방문 전 전문가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는 성별과 연령 등에 한정되어 있어, 학생이 아닌 담임교사의 요청에 대한 맞춤형 성교육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며,

- 찾아가는 성교육은 1회당 20명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연령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 매뉴얼에 따른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성교육의 효과성이 우선이 아닌 수업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맞춤형 성교육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SAY찾아가는성교육’의 개요 〉

- 목적 :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주제로 성교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성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올바른 성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유아 및 청소년
- 인원 : 4,720명(실인원4,720명)
- 각 반교육 4,720명 (20명×236회)
- 내용 :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사춘기, 성폭력예방 등)
- 참가비용 : 1시간 100,000원, 연강(시간당 추가) 50,000원
- 소요예산 : <세입>23,600,000원 <세출>9,950,000원

출처 : 2022년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계획서 중 세부프로그램

- 창동성문화센터는 2022년 1천 여건의 찾아가는 성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본 센터의 현원이 5명이라는 점, 매월 같은 수의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닌 방학 직전(7월, 11월, 12월 등)에 성교육요청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여짐.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은 성문화센터의 기관의 장, 팀원 및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본 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은 ‘활동가’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어 전문성 결여의 우려가 있으며, 직원이 아닌 용역을 통해 본 센터의 주요한 사업을 수행토록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위탁사무에 미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전문성이 결여된 위탁업무 수행은 민간위탁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 >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강사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평생교육국이 광운대학교에 위탁한 사무는 성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본 동의안을 통해 위탁할 사무에도 성상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동성문화센터는 2022년 실적에서는 1건의 상담도 없었으며, 1만 4천 여명을 교육하면서 성교육 상담 연계만 10명으로,
- 위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역량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수익사업을 우선하여 상담보다 출장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상담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발하여 위탁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아하성문화센터를 제외한 모든 성문화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수탁법인의 위탁사무 미이행이며, 평생교육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기본적인 역할인 관리·감독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사무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출처 : 의안번호 09-02355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2.6.)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22년 사업실적 총괄표 〉

구 분	목표		실적		달성률(%)		성별 실적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남	여
교육 프로그램	1,074	10,137	1,309	14,202	122	140	7,775	6,427
문화 활동	16	2,780	56	2,786	350	100	1,126	1,660
조직 활동	22	1,725	112	3,547	509	206	1,491	2,056
성교육 상담 및 연계 등	6	12	10	10	167	83	9	1
합 계*	1,118	14,654	1,487	20,545	133	140	10,401	10,144

- 창동성문화센터는 광운대학교가 18년간 장기수탁하여 시설을 독점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이 광운대학교의 부속시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소년단체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수탁 단체 선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2005.07.27.~2008.07.26. : 최초위탁협약[(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공개모집]
- 2008.07.27.~2011.06.30. : 재위탁[(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2011.07.01.~2013.06.30. : 재계약[(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2013.07.01.~2016.06.30. : 재위탁[(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2016.07.01.~2018.06.30. : 재계약[(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2018.07.01.~2018.06.30. : 재위탁[(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2021.07.01.~2018.06.30. : 재계약[(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8)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이하 ‘명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시설 명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시설규모 : 200.5㎡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7.1.~2026.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63백만원(2023년, 국비 36백만원, 시비 627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520백만원, 운영비 34백만원, 사업비 109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하 ‘마포아이월센터’)는 마포청소년센터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1명의 인력이 6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2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구분	상담실 (매체치료실, 개인상담2실)	집단상담실 표현예술치료실	세미나실	사무실	공용면적	합계
면적	63.55㎡	31.77㎡	23.69㎡	45.43㎡	36.08㎡	200.52㎡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10	10	1	-	1	1	2	5	-	-	-	-	-	-
현원	11	6	-	-	1	-	2	3	-	-	-	5	5	-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주요사업 현황 〉

2023년도 기준 5개 사업 24개 프로그램

- 상담사업 : 마음노크, 병원연계,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집단상담
- 예방사업 : 찾아가는 e-예방교육, 생애통합예방교육, 꿀부자, 우리학교지원단 등
- 연구사업 :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 전문가양성교육, 스마트미디어연구, 연합보고대회
- 홍보사업 : 우리동네캠페인, 아웃리치, 세별이프로젝트, 지역사회연계 등
- 기타사업 : 과의존예방해소사업, 학부모정보통신윤리 교육, 전담상담사배치사업 등

〈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2010.05.10.~2013.06.30. : 최초위탁협약[(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공개모집]
- 2013.07.01.~2015.08.31. : 재계약[(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2015.09.01.~2018.06.30. : 재위탁[(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2018.07.01.~2020.06.30. : 재계약[(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2020.07.01.~2023.06.30. : 재위탁[(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최근 3년간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686,590	684,565	2,025	99.7%
2021	686,074	677,923	8,151	98.8%
2020	675,548	671,598	3,950	99.4%

- 평생교육국은 총 6개소의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이하 ‘아이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아이월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관련 상담사업, 예방교육, 연구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상담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감소한바 있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황 〉

센터명	광진	보라매	창동	마포	강북	강서
개소일	'07.07.25	'09.04.21	'10.07.01	'10.07.01	'12.06.01	'13.11.01
소재지	광진구	동작구 보라매청소년센터 내	도봉구 창동청소년센터 내	마포구 마포청소년센터 내	강북구	강서구
면적	234㎡	203.3㎡	285.17㎡	200.52㎡	212㎡	274.17㎡
운영법인	사)홍사단	재)서울가톨릭 청소년회	학)삼육학원 삼육대학교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학)대한예수교 장로회총신대 학교
위탁기간	'20.07.01~ '23.06.30	'19.07.01~ '21.06.30	'18.07.01~ '21.06.30	'20.07.01~ '23.06.30	'20.04.01~ '23.03.31	'18.07.01~ '21.06.30
정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관할구역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금천구, 영등포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마포아이월센터 관련 위탁사무는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상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문성 또는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마포아이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은 마포청소년센터도 수탁하고 있는바,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의 부속화, 사설화를 방지하고, 다른 청소년 단체가 본 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적 분리의 필요성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마포아이월센터는 2022년 총 7만 1천 여명에게 상담 및 예방사업을 추진했으며, 상담은 2만 1천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본 센터가 수립한 성과지표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전문강사와 시간강사를 확보하는 것임.

〈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2년 사업실적 〉

(단위:회, 명, 천원)

분야/사업	계 획		실 적		소요예산(천원)	
	회	명	회	명	수입액	집행액
인터넷중독예방상담사업	19,718	63,656	20,840	71,745	19,045	179,889
상담사업	18,065	21,076	18,857	21,763	10,395	80,680
마음노크상담	6,400	6,600	6,532	6,614	8,915	21,230
병원연계 및 심리검사	7,600	7,600	7,677	7,761	1,480	2,150
찾아가는상담	3,700	3,900	4,272	4,324	0	45,000
수퍼비전 및 사례회의	23	250	27	293	0	2,500
청소년 집단상담	320	2,300	307	2,351	0	8,000
희망e-점프	42	426	42	420	0	1,800
예방사업	867	29,460	1,113	36,600	0	25,130
연구사업	85	1,890	142	2,061	8,650	13,918
홍보사업	98	7,680	105	7,830	0	9,046
기타사업	603	3,550	623	3,491	0	51,115

〈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2년 핵심성과지표 〉

핵심성과지표

운영목표	성과지표	2020 (기준)	2021 (목표)	2022 (계획)
스마트미디어중독 대응 전문인력 양성	•전문강사 및 상담사 인력 확보	29명	30명	31명
	•스마트미디어중독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7회	7회	8회

출처 : 2022년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운영계획 14페이지 발췌

○ 마포아이월센터의 핵심사업인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수행하고 있어, 핵심 사업을 외부 강사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탁사무의 핵심적인 사무를 직접수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위탁사무 추진방식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마포아이월센터를 포함한 6개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상담은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중 정보공유 동의한 청소년 중 위험군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관할지역으로 통보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 각 센터에서는 센터를 방문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접수면접지 등을 통해 진단*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 및 과의존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으며, 학령전환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과 과의존 청소년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진단조사 : 일반 청소년 중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

※ 접수면접지 : 청소년이 상담을 위해 내방했을 때, 정확한 상태진단을 위한 설문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 조사대상 : 전국 학령전환기(초1, 초4, 중1, 고1)청소년 156만명
*2023년부터 초1 포함(단, 초1은 학교적응 후 조사, 7월 조사예정)
- 조사내용 : 청소년등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자가진단
- 조사도구 : K-척도(인터넷 과의존), S-척도(스마트폰 과의존)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관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3.7.~2026.6.) 공모를 통해 재위탁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위탁사무명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자유회관 3층)
 - 시설규모 : 총 307.56㎡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 이용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등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3.7.1.~2026.6.30.)
 - 위탁사무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2,184백만원(2023년)
 - 인건비 739백만원, 운영비 73백만원, 사업비 1,371백만원, 예비비 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 학교밖청소년센터는 보라매 공원 내 자유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12명의 인력과 21억 8천만원의 민간위탁금 중 1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2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현황 〉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직
정원	11	11	1	1	-	3	3	3	-	-	-	-
현원	12	10	1	1	-	2	2	4	-	-	-	2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사업 현황 〉

구 분	세 부 사 업
맞춤형 지원	① 학습비 지원, ②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③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④ 맞춤형 상담, ⑤ 학교 밖 청소년 기획봉사단, ⑥ 진로상담, ⑦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⑧ 위기청소년 지원, ⑨ 집 밖 챌린지(Challenge), ⑩ 가족 소통 ‘함께할 개(Dog)’, ⑪ e-스포츠 한마당, ⑫ 멘토 그룹 강화, ⑬ 멘토링 연계, ⑭ 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 ⑮ 문화예술 관람 지원, ⑯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⑰ 어나더 e 클래스 지원
기획행정	⑱ 전략 및 홍보, ⑲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자본형성	⑳ 센터기능 보강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1차: 2001.4.~2004.3. : 최초 공개모집((학)연세대학교)
- 2차: 2004.4.~2007.3. : 재위탁 공개모집((학)연세대학교)
- 3차: 2007.4.~2010.8. : 재위탁 공개모집((학)연세대학교)
- 4차: 2010.9.~2013.6. : 재위탁 공개모집((사)한국청소년재단)
- 5차: 2013.7.~2016.6. : 재위탁 공개모집((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6차: 2016.7.~2018.6. : 재계약((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7차: 2018.7.~2021.6. : 재위탁 공개모집((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8차: 2021.7.~2022.6. : 재계약((재)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10,696,278	8,745,471	1,950,807	81.8%
2021	10,161,099	8,952,839	1,208,260	88.1%
2020	5,367,921	4,265,343	1,102,578	79.5%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간 조직망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본 시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제출하고 있어, 조례상 명칭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이 불일치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심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명칭비교

- 조 례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동의안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첫째, 대법원은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어의(語義,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 해석하도록 판결하고 있고,

※ 법해석(단어, 자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법 자구 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법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고,
- 법해석은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리해석**(법의 자구 및 문장을 언어적 의미에서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논리해석**(입법목적에 따른 해석), **체계해석**(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의 방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어의(語義,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 해석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명분으로 '법형성 및 법 창조' 등에 버금가는 확장해석 및 창조해석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 둘째,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청소년의 오인을 이용한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의 유사명칭을 금지하고,

- 특히 청소년보호시설 및 학교밖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시설명을 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여성가족부는 신뢰성 및 범죄활용 가능성의 사전 차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명으로 운영하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의 명칭을 2023년부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통일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여성가족부가 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지정 기준 - 인력 : 6명 이상(시·도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지정 기준 - 인력 : 6명 이상(시·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포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및 로고의 사용 - 명칭 : ○○ 시·도 ,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및 로고의 사용 - 명칭 : ○○ 시·도 , ○○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변경

출처 :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 셋째,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동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위탁사무·위탁기간의 확정’으로, 본 동의안은 대상의 확정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음.
- 법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취지, 민간위탁의 대상확정의 모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의안의 처리가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민간위탁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은 단순착오로 볼 수 있으나, 조례규정,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성의 변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책변경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무관심, 전례답습적 행정관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의무 경시 등 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대한 시각이 가감없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2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동안 축소되었던 개인 맞춤형 지원, 상담, 성장지원 등의 사업확장이 필요하나,

- 13억 7천만원의 사업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성장 프로그램 등에는 5.7%(2억 7천만원)를 배정하고,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업료 지원 등 학업지원, 인턴십 등 '신청에 의한 사업'에 73.2%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2023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 〉

(단위:명,천원)

분야 / 사업	계획인원		예산편성	
	인원수	비율	예산액	비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6,177	100.0%	1,371,324	100.0%
기획행정사업	33,000	91.2%	25,000	1.8%
전략홍보사업	30,000	82.9%	17,210	1.3%
활동정보 시스템개선 사업	3,000	8.3%	7,790	0.6%
지원사업	2,076	5.7%	268,224	19.6%
맞춤형 상담사업	270	0.7%	20,000	1.5%
진로상담공간플랜B운영사업	300	0.8%	22,000	1.6%
성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100	0.3%	5,224	0.4%
e-스포츠 한마당	100	0.3%	5,000	0.4%
학교 밖 청소년 기획봉사단	40	0.1%	4,000	0.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64	0.2%	5,000	0.4%
집 밖 챌린지(challenge) 사업	96	0.3%	12,000	0.9%
가족 소통 '함께할개(Dog)' 사업	50	0.1%	2,000	0.1%
학교 밖 청소년 멘토 그룹 강화사업	400	1.1%	90,000	6.6%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연계 사업	40	0.1%	3,000	0.2%
학교 밖 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	160	0.4%	3,000	0.2%
어나더 e- 클래스 지원사업	56(8개소)	0.2%	88,000	6.4%
문화예술관람지원사업	200	0.6%	비예산	-
학교밖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200	0.6%	9,000	0.7%
정책사업	1,100	3.0%	1,004,400	73.2%
인턴십 프로젝트지원사업	400	1.1%	250,400	18.3%
수업료지원사업	200	0.6%	254,000	18.5%
학업지원사업	500	1.4%	500,000	36.5%
자본형성사업	1	0.0%	73,700	5.4%
센터기능보강사업	1	0.0%	73,700	5.4%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가장 시급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개인별 맞춤형 사업(고민상담, 진로 및 학업 지원, 적성에 맞는 교육제공, 자립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3.6.30.)될 예정으로, 향후 2년간(2023.7.~2025.6.)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23-1, 자유회관 1층
- 시설규모 : 340㎡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민간위탁기간 : 2년(2023.7.1.~2025.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적격 심의(재계약)
- 소요예산 : 252백만원(2023년, 국비 88백만원, 시비 164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15백만원, 운영비 3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동작성문화센터’)는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개관 이후 8년 동안 사단법인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5명의 인력이 2억 5천 2백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19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간 사용·활용 현황 〉

(단위: m²)

층	사용/활용현황	면적
지상1층	교육강의실 및 체험관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5	5	-	-	1		1	2	1	-	-	-	-	-
현원	5	5	-	-	1	-	1	2	1	-	-	-	-	-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23년 주요사업 현황 〉

2023년도 기준 4개 사업 19개 프로그램

- 교육사업 : 체험형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장애 성교육, 성인 성교육, 사춘기 파티, 토요일 성교육
- 문화사업 : 캠페인, 아웃리치, 지역 축제, 성평등 영화상영회, 홍보
- 연대사업 : 자문회의 및 간담회, 포괄적성교육 전문강사, 지역연대 및 네트워크, 학교 연계 동아리, 자체 모집 동아리, 종사자 연수 등
- 상담지도사업 : 성상담 연계

출처 : 2023년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계획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추진경위 〉

- 2015.11.18.~2018.10.30. : 위탁협약체결[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공개모집선정]
- 2018.11.01.~2020.06.30. : 2차 협약체결[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재계약]
- 2020.07.01.~2023.06.30. : 3차 협약체결[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재위탁]

〈 최근 3년간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정산 결과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	244,873	237,842	7,031	97.1%
2021	242,000	242,000	0	100.0%
2020	226,341	226,338	3	100.0%

- 최근 무분별한 성 정보의 범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성희롱·성폭력·성착취와 성관련 문제-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원조교제)등이 온라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로로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전달과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성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문화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닌지, 선정 이후에도 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동작성문화센터는 홈페이지가 없으며, 검색으로 홈페이지를 찾으면 수탁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 수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성문화센터의 정보도 찾을 수 없고, 수탁기관의 다른 정보(다른 수탁기관의 정보)만 노출되어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정체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홈페이지 첫화면 〉



출처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홈페이지 (<http://joeunesang.org/plus>)

- 한편, 수탁기관은 건의사항을 통해 독립홈페이지의 제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바, 동작성문화센터가 개관한지 8년이나 경과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되지 않는 부적정한 홈페이지 운영의 원인은 평생교육국의 무관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의 적절한 역할수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동작성문화센터의 다른 성문화센터와 같이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성교육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성관련 상담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바,
 - 모든 시립성문화센터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권역성문화센터 연합 역량강화 사업’이 노하우 전달의 장이 아닌 실행하기 쉽고 성과도 비교적 우수하게 나오는 수익사업(출장 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노하우 전달의 경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성문화센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3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계획 〉

(단위:명, 천원)

분야/사업(프로그램)	인원	
	계획	비율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14,412	100.0%
교육프로그램	12,245	85.0%
문화활동	744	5.2%
조직활동	1,422	9.9%
성교육 상담 및 연계 등	5	0.0%
성교육 상담	-	-
성상담 연계	5	0.0%

- 언론은 ‘학생·학부모들은 학교의 성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성교육도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내밀한 사연까지 다루어야 하는 성상담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성문화센터를 포함한 시립성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성교육(20명 정원 단체 성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민간의 성교육시장이 급속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은 시립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효과성도 미흡하다는 간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며,
- 보여주기식, 구색 갖추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성교육과 성문화 확산을 위해 성문화센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간 성교육 관련 언론보도

- 조선일보 : 학교 성교육 못 미더워 사교육 한다는데... 변화 필요한 성교육
- 한국일보 : n번방 사건 계기로 '성교육 과외' 수요 급증
- 서울신문 : “학교 성교육 있으나 마나” 사교육 찾는 엄마들

- 동작성문화센터는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제 강사 등을 운영하여 출장 성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바, 강사활동에 대해 균일하고 높은 질적 수준의 유지·확보를 위해 공동된 교육방향 및 교육자료, 강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성문화센터의 기능이 성교육으로 집중되고, 성상담기능은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문화센터가 성관련 상담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성문화센터의 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 자치구, 보건소 등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검토

-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행정의 비전문성 및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만, 코로나로 침체된 청소년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욕구·흥미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전문가 주의, 행정 편의주의, 무분별한 전례답습 등에 사로잡혀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장점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이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장기수탁 및 다수수탁 등의 폐해로 인해 민간위탁 시장은 소수의 대형 청소년단체가 좌지우지하거나,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관계가 주객전도되어 시립시설이 수탁기관의 수익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닌지, 민간 위탁 시장의 활성화, 관리·감독의 강화 등 청소년시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청소년활동의 안전, 계약이행(위탁사무의 미이행), 정보공개 및 홍보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정찬일